

현안분석 2001-

디지털경제법제⑩

# 미국의 電子政府法制

林智奉

한국법제연구원



# 미국의 電子政府法制

E-Government related Legi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研究者 : 林智奉(건국대 법대 교수)  
Lim, Jibong

2001.12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제 1 장 서 론: 문제의 제기 .....	7
제 2 장 연방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 .....	11
제 1 절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 .....	11
1. 입법 배경 .....	11
2. 주요 내용 .....	12
제 2 절 1980년, 1986년, 1995년,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과 시행규칙 .....	13
1. 1980년의 정부문서감축법 .....	13
2. 1986년의 정부문서감축법 .....	14
3. 1995년의 정부문서감축법 .....	14
4.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 .....	16
5. 1999년의 정부문서감축법 시행규칙 .....	22
제 3 절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 .....	24
제 4 절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 .....	25
1.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의 의의 .....	25
2.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 원문 .....	25
3. 주요내용과 평가 .....	36
제 5 절 1993년 9월 11일의 고객서비스기준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12862호 .....	37
1. 입법 배경 .....	37
2. 주요 내용 .....	37
3. 평 가 .....	38
제 6 절 1996년의 연방정보자원들의 운영에 관한 정부회람 A-130 .....	38

1. 제정 배경 .....	38
2. 주요 규정 내용 .....	39
3. 평 가 .....	40
제 7 절 1996년의 정보기술관리개혁법 .....	40
1. 입법 배경 .....	40
2. 주요 내용 .....	40
3. 평 가 .....	41
제 8 절 1996년의 연방정보기술에 관한 행정명령 제13011호 .....	42
제 9 절 1996년의 전자정보자유법 .....	42
제10절 1998년의 사회복지법 제508항 .....	43
1. 입법 배경 .....	43
2. 주요 규정 .....	43
3. 동법에 대한 평가 .....	47
제11절 1998년 대통령 행정훈령 “연방기록상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48
제12절 1998년의 연방웹사이트들을 위한 중요한 프라이버시 원칙들 .....	49
제13절 1999년의 전자기록운영에 관한 NARA 고시 99-04 .....	49
제14절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 .....	50
1. 입법 배경 .....	50
2. 2000년 10월 1일에 발효한 연방전자서명법의 주요 규정 .....	52
3. 동법의 주요내용 .....	54
4. 동법에 대한 평가 .....	55
5. 연방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와의 관계 .....	59
제15절 소 결 .....	60

제 3 장 이들 연방 전자정부법제들의 시행 이후 .....	61
제 1 절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의 개념 .....	61
제 2 절 연방사이트들의 등장 .....	62
1. 연방정부에의 접근을 위한 FirstGov .....	62
2. 연방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 .....	64
제 4 장 각 州 레벨에서의 전자정부관련법제들과 사이트들 .....	73
제 1 절 Kansas주 Twin City의 Twin City Free Net .....	73
제 2 절 California주 시미밸리시의 HUD .....	74
제 3 절 Ohio주의 Ohio Public Records Act .....	74
제 4 절 Washington주의 AccessWashington 웹사이트 .....	75
제 5 절 Utah주의 Utah Digital Signature Act .....	79
1. 입법배경 .....	79
2. 주요 내용 .....	79
3. 평 가 .....	81
제 5 장 미국 전자정부법제에 대한 평가 .....	83
제 6 장 미국 전자정부법제의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	87
제 7 장 결 론 .....	89
참고문헌 .....	91

## 제1장 서론: 문제의 제기

우리는 요즘 세계가 전자화·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러한 전자화·디지털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부문에서도 정부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정부”로의 구조개혁이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에 있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전자정부 개혁의 노력들을 그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한국에 도입가능한 법제들을 찾아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들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어 一義적으로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sup>1)</sup> 미국에서도 전자정부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전자정부개념의 주된 출처가 된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국가행정성과평가)의 부속보고서인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에서는 전자정부개념을 전자은행서비스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전자정부는 전자은행서비스(Electronic Banking)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인데, ATM, 플라스틱으로 된 접근카드,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가 은행업무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해 주었듯이 전자정부도 정부와 고객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이에 전자은행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부에서도 당연히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sup>2)</sup> 설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특히 가시화 되고 많은 연구프로젝트와 법제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였다. 클린턴은 미국 연방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그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으로

1) 전자정부개념의 다의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한국의 전자정부법안에 나타난 전자정부의 정의 및 한국전산원에 의한 전자정부의 정의에 관해 자세히는, 김재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의 정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80~81쪽 참조.

2) NATIONAL PERFORMANCE REVIEW,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1993.



당선된 이후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대대적인 행정개혁작업을 벌였다. 이 행정개혁작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NII(National Information Structure, 국가정보기반) 구축사업과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국가행정성과평가) 사업이 그것이다. 첫째, NII사업은 앨 고어 부통령이 1993년에 Information Superhighway(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케이블망 사업에 책임자로 임명되어 뛰어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미국 전체에 미치는 광활한 광케이블망을 설치하여 전국민이 정부나 각종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형태의 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보다 수준 높게 실현한다는 것이었다.<sup>3)</sup> 둘째, NPR사업은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앨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NPR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개혁차원에서 정부운영방침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 제창한 것이다. NPR은 기존의 행정과정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통해 연방정부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성과지향적인 전자정부를 이룩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전자정부 개념과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핵심은 많은 행정학자들에 의해, 첫째,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과 둘째, 정부가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이해하는 고객지향적인 열린 정부의 구현이라고<sup>4)</sup> 이야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심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연방과 州政府를 중심으로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 또 시도되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로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서는 어떤 법제들이 연방과 州의 레벨에서 제정·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정부 관련 법제나 시도들의 한국에의 수용가능성을 생각해보고, 그 수용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예견해 봄으로써, 한국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탐구해 본다.

3) 권기현,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171~172쪽.

4) 전계서, 170쪽.

전자정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행정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현상분석적인 것이었다면, 본 연구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법제들의 개발에 좋은 시사점들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분야가 미국에서도 시도된 지 얼마 안 되는 비교적 첨단분야인 만큼, 인터넷상의 자료조사들도 세밀하게 이루어진다. 이 연구를 통해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의 전자정부관련법제 정비에 큰 他山之石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장 연방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 중 우선 연방레벨에서의 법제들을 살펴본다. 여기에 열거된 법제들이 전자정부와 관련된 미국연방법제들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존의 법제들 중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아우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자정부관련 미국연방법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시기순으로 이들을 배열함으로써, 전자정부와 관련된 미국연방법제의 그간의 흐름과 추세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였다.

### 제 1 절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sup>5)</sup>

#### 1. 입법 배경

전자정부와 관련된 미국연방법제의 출발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잡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클린턴 행정부가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전략으로 전자정부개념을 본격적으로 행정에 도입하기 시작한 1993년보다 20년 정도나 앞선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에 이미 ‘전자정부 구현’의 법적 토대가 되는 맹아가 발견되고 - 비록 전자형태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1970년대의 미국 행정부나 입법부도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고 간헐적인 법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한 여러 체계적인 법제정이나 행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들에 의해 가속화되고 본격화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법은 개인의 私의 정보가 정부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同法에 의해 개인정보는 그 정보 주체인 개인에 의한 事前 書面同意가 없으면 공개될 수 없다. 同法은 또한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개인이 그들의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다.

5) 전체 법규정의 원문은 <http://www4.law.cornell.edu/uscode/5/552a.html> 참조.

##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의 조건들 (Conditions of Disclosure)은 (b)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은 비공개 의 원칙 위에 다시 12가지의 예외 사유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예외사유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행정공무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개인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 관계 행정공무원들에게는 개인기록들을 공개할 수 있다거나(1호), 인구조사국(Bureau of the Census)이 인구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려 할 때 이 인구조사국에 개인기록들을 공개할 수 있다거나(4호), 그 기록이 통계조사나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그 개인정보가 그 개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 쓰여질 것임을 事前에 書面으로 확약한 사람에게 공개된다거나(5호), 미합중국정부에 의해서나 국립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종사자들에 의해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할만한 역사적 가치나 다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개인기록들을 국립기록보관소에 보낼 수 있다거나(6호), 법집행기관의 長이 법집행활동(a civil or criminal law enforcement activity)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시하여 書面으로 이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라든지(7호), 연방의회나 그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 연석회의에 공개할 수 있다거나(9호),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라든지(10호), 그 사안에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11호)에 개인정보를 이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동법 (e)는 세 가지 요건들(Agency Requirements)을 규정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 행정기관들은 첫째, 국회제정법이나 대통령령에 나타나는 그 행정기관의 활동목적을 이룩하는 데 필요하고 관련있는 그러한 개인정보들만을 관리하고(1호), 둘째, 개인정보가 연방프로그램 하에서 그 개인의 권리나 특권에 관한 반대의 결정을 낼 수 있을 때, 행정기관은 그 개

인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 경로를 통해 최대한으로 수집할 수 있고(2호), 셋째, 행정기관은 정보 제공을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개인 각자에게 그 정보수집에 사용되는 정보수집의 형태(form) 등에 관해 알려주어야만 한다(3호).

## 제 2 절 1980년, 1986년, 1995년,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과 시행규칙

### 1. 1980년의 정부문서감축법

“문서없는 사무실”을 그 이상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문서의 감축작업을 위해, 미국에서는 일찍이 1980년에 정부문서감축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of 1980)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이 법은 대통령 직속의 운영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를 중심 추진기관으로 하여, 첫째, 각 기관의 문서감축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리더십 발휘와, 둘째, 범정부적 정보관리의 효율화 달성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뒤에서 보게 될 정부업무수행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과 함께 미국 ‘전자정부 구현’의 가장 중요한 두 법제들 중의 하나로서 기능해 왔다.<sup>6)</sup> 이 법은 1980년 당시 다음의 두 가지 구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입법화되었다. 첫째, 지나친 문서작성과 유통이 가져다주는 시간과 경비가 행정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도 불편을 준다는 점, 둘째, 정부에 의한 정보관리의<sup>7)</sup> 필요성이<sup>8)</sup> 그것이다.

6) J.C. Beachboard and C.R. McClure, “Managing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Conflicting Policies and Competing Philosophies” 13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15-33.

7)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s)’이란 정보 그 자체와 그것을 다루는 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신, 사무자동화체제 및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인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란 ‘조직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데이터베이스, 원거리 통신 시스템, 조직구조와 절차 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행정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보자원관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켰다는 데 있었다. 그 문제점들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운영예산처가 이 법의 시행을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보다는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1986년에 수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 2. 1986년의 정부문서감축법

1986년 정부문서감축법의 주요개정사항은 첫째, 문서활용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요구된 점, 둘째, 운영예산처에 종합적인 정보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 점, 셋째,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定義가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간 점, 넷째, 각 기관에게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점 등 이었다.<sup>9)</sup> 이 1986년의 정부문서감축법도 시행과 더불어 다시 다른 문제점들을 나타냈고 이 새로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정보자원관리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1995년에 새로운 정부문서감축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 3. 1995년의 정부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ublic Law 104-13)<sup>10)</sup>

1995년의 정부문서감축법개정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同法은 개인, 중소기업, 교육기관이나 비영리기관, 연방계약자, 州政府나 지방자치정부에게, 연방정부에 의한 정보수집의 결과로 파생되는 문서작성

---

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정보자원관리'의 개념 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일찍부터 노력하였는데, 그 노력의 한 결과물이 바로 1980년의 문서감축법인 것이다. '정보자원관리'개념에 관해 자세히는 RALPH M. STAIR, PRINCIPLES OF INFORMATION SYSTEMS: A MANAGERIAL APPROACH(Boyd & Fraser Publishing Company, 1992) 참조.

8) 同法 제정동기에 관한 자세한 記述로서는,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4.) 166쪽 참조.

9) 전계서, 167쪽.

10)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04:SN00244:TOM:/bss/d104query.html> 참조.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함을 그 주된 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同法은 또한 연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 정보자원관리정책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단일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더불어, 同法은 정부보유정보들을 얻으려는 모든 시민들을 도울 의도로 정부정보추적확인서비스제도(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를 확립했다.

특히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 관한 3503항은 (a)에서 운영예산처(OMB) 내에 정보규제국의 설립을 규정했다. 연이어 3504항에서는 예산운영처장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a)(1)은 예산운영처장이 公衆의 문서작성부담 감소와 公衆에의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정보자원의 사용을 감독하게 했고, 그러한 감독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예산운영처장은, 첫째, 연방정보자원관리 정책과 기준·가이드라인의 시행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감독하고, 둘째, 정보의 공개·공유·보안 등과(5호) 정보 기술의 습득과 사용을 감독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내릴(6호) 권한을 갖게 되었다.

연방행정기관의 책임(Federal Agency Responsibilities)과 관련해서도 3506항에 명문규정을 두어, 연방행정기관은, 첫째, 정보자원관리 결정들이 그 행정조직의 계획, 예산, 재정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및 프로그램 결정들과 통합될 수 있는 둘째, 그 행정기관과의 협력 하에 최고재정담당관(Chief Financial Officer)이 정보기술에 관련된 정확한 지출회계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셋째, 정보자원관리의 연방프로그램 생산성·효율성에의 기여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목표들과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목표들을 개발하는 지속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법을 평가해보면 이 법은 크게 보아 첫째,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정보자원관리 추진을 위한 진일보한 전략들을 개발케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운영예산처에 전반적인 감독권이 부여되었는데, 첫째, 운영예산처로 하여금 범정부적인 정책과 지침을 개발하고 조정하도록 했으며, 둘째, 각 기관이 정보자원을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운영예산처로 하여금 이를 감독



하게 하였다. 더불어 셋째, 각 기관은 정보관리업무가 기관의 계획, 예산과 재정관리, 인적자원관리 등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각 기관의 최고관리층이 중심이 되어 정보자원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했다.<sup>11)</sup> 또한, 동법에 의해 요구되어진 자원관리 정책에 대해 1996년에 연방정부 공통의 단일 자원관리정책이 입안·공포되었는데 이것이 연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정부회람 A-130(Circular A-130, Management of Federal Information Resources, 1996)이었다.<sup>12)</sup>

#### 4.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Public Law 105-277)<sup>13)</sup>

##### (1) 주요내용

가장 최근인 1998년에 개정된 정부문서감축법은<sup>14)</sup> 연방행정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유지하고 공개하는 이들에게 늦어도 2003년 10월 21일까지는 그러한 정보를 가능하다면 전자형태로 제출·유지·공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하고 있다.(제1704항) 더불어, 동법은 전자 신원확인방법(전자서명)이 정보전송자의 신원과 그 전자정보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담보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게 했다. 예산운영처장은 행정기관들에 의한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에 관한 절차들을 개발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국립전기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11) 문신용, 전게서, 167쪽.

12) 이 회람규정에 관해서는 뒤에서 곧 자세히 살펴본다.

13) 1995년의 Paperwork Reduction Act를 “문서업무감축법”으로, 1996년의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를 “문서업무삭제법”으로 구분하여 번역하는 입장이 있으나(정충식, “전자정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방안과 과제 토론회 발표문, 49쪽) 이에는 찬성할 수 없다. 물론 “elimination”은 감소·감축이라는 뜻의 “reduction”과 달리 그 사전적 의미가 “삭제·제거”이지만, 이것은 굳이 법령의 번역에서 꼭 살려주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of 1996은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를 개정한 개정법이므로, 그 명칭번역에 있어서도 동일한 번역을 사용해 주어야 後者が前者의 개정법임이 확연히 들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4)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05:HR04328:|TOM:/bss/d105query.html>의 요약 참조.

Administration)과의 협력 하에 문서감축과 전자상거래상의 전자서명의 사용,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정보처리상의 보안과 정보의 진위여부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를 행하고 이에 관해 연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1706항).

(2) 1998년 정부문서감축법 全文

이 1998년의 미국 정부문서감축법은 미국연방법령집(USC) 제44편 3504 페이지에서부터 수록되어 있다. 중요한 전자정부 관련법제이므로 첫 조문부터 시작해서 완역을 시도해본다.

1701항. 짧은 명칭

이것은 “정부문서감축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이라 인용될 수 있다.

1702항. 행정부에 의한 대안적(代案的) 정보기술의 습득과 사용을 가능케 하는 운영예산처(OMB)의 권한

미연방법령집 제44편 3504항 (a)(1)(B)(iv)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iv)정보기술의 습득과 사용이란 종이를 대신하여 정보의 전자적 제출, 유지 혹은 공개를 가능케 하는, 그리고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을 포함하는, 대안적 정보기술들을 포함한다.

1703항. 행정부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사용과 그 수락에 관한 절차들

(a) 일반규정 - 미연방법령집 제44편 35장, 1996년 클링거-코헨법규정들(公法典 104쪽에서 106쪽에 기재된 D부와 E부), 同法の 개정조항들, 그리고 미연방법령집 본 編의 규정들에 의해 부여된 기능들을 감독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립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협의 하에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운영예산처의 처장은 행정기관들에 의한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에 관한 절차들을 개발한다.

(b) 절차요건들

(1) (a)항에 의해 개발된 절차들은

(A) 상업계, 산업계, 州政府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전자서명을 위한 기술과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B) 한 사업이나 기술에 부적절하게 유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C) 전자서명들은 同法の 목적에 비추어 이에 적합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제출된 정보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D) 성공적으로 제출되어진 전자문서들에 대한 전자적 승인에 대해 규정한다.

(E) 실행가능하고 적합한 한도 내에서, 특정형태로 된 50,000이상의 문서제출을 전자형태로 받을 것을 기대하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의 여러 방식들이 그러한 형태의 문서제출을 위해 가능함을 확실케 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2) 운영예산처장은,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의 기준들을 정하는 私의 단체와 주정부들과 협의하에 위의 (1)(A)하의 절차들과 이 기준들이 조화될 수 있게 한다.

1704항.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을 위한 절차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행들에 관하여

미연방법령집 제44편 35장, 1996년 클링거-코헨법규정들(公法典 104 쪽에서 106쪽에 기재된 D부와 E부), 同法の 개정조항들, 그리고 미연방법령집 본 編의 규정들에 의해 부여된 기능들을 감독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법 제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하여, 운영예산처장은 행정기관이 다음을 행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행정기관은

(1) 종이 대신 가능하다면, 정보의 유지, 제출, 공개를 전자형태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2) 실행가능하다면,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을 허용한다.

1705항. 고용문서들의 전자적 저장과 파일작업

미연방법령집 제44편 35장, 1996년 클링거-코헨법규정들(公法典 104쪽에서 106쪽에 기재된 D부와 E부), 同法의 개정조항들, 그리고 미연방법령집 본 編의 규정들에 의해 부여된 기능들을 감독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법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운영예산처장은, 피고용인에 관한 정보들을 담은 문서들을 私的 고용인들로 하여금 행정기관과 함께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분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들을 개발한다.

1706항. 전자서명의 사용에 관한 연구

(a) 요구되는 지속적인 연구 - 미연방법령집 제44편 35장, 1996년 클링거-코헨법규정들(公法典 104쪽에서 106쪽에 기재된 D부와 E부), 同法의 개정조항들, 그리고 미연방법령집 본 編의 규정들에 의해 부여된 기능들을 감독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립통신정보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협력 하에 운영예산처장은 본 編에 규정된 다음 사항들에 관해 전자서명의 사용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수행한다.

- (1) 문서감축과 전자상거래
- (2) 개인의 프라이버시
- (3) 전자문서 처리의 안전성과 그 문서의 진위여부

(b) 보고서 - 운영예산처장은 (a)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1707항. 전자기록들의 집행과 법적 효과

이 편에 규정된 절차들에 따라 제출되고 보관된 전자기록문서들, 혹은 그러한 절차들에 따라 사용되어진 전자서명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전자적 인증장치들은 그러한 기록들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법적 효과, 유효성,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1708항. 정보의 공개

법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이 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전자서명 하에 수집된 정보는, 사업상 혹은 정부일로 그러한 정보를 얻고, 수집하고, 혹은 보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혹은 그 정보에 관계된 사람의 事前的 명시적 동의하에서만, 그러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공개되어진다.

1709항. 國稅法에의 적용

이 편의 어떤 규정도 아래의 범위 내에서는 재무성이나 국세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그것이 국세법 행정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2) 그것이 1998년의 국세청개혁법이나 1986년의 국세법 규정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1710항. 定義들

이 편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다음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 - “전자서명”이라는 용어는 다음 전자메시지의 서명방식을 의미한다.

(A) 전자메시지의 출처로서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어떤 특정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전자메시지

(B) 그런 특정인에 의한 전자메시지에 담겨있는 정보의 승인을 나타내는 전자메시지

(2) 행정기관 -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미연방법령집 제5편 제105항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가진다.

17편: 정부문서감축법 - 정부문서감축법은 운영예산처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보기술의 취득과 사용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이를 검토함에 있어, 종이의 대체물로서 정보의 전자적 제출, 유지, 혹은 공개를 제공할 대안적 정보기술과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을 제공할 대안적 정보기술을 개발한다.

(2) 행정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을 위한 절차들을 개발한다.

(3) 5년 이내로, 행정기관들이 종이 대신 전자형태로 정보를 보관, 제출, 혹은 공개할 선택권을 제공할 것을, 그리고 실행가능 하다면 전자서명의 사용과 수락을 허용할 것을 보장한다.

(4) 사적 고용인들이 행정기관과 함께 피고용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들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을 개발한다.

(5) 국립전기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협력하여, 문서감축과 전자상거래에 따른 전자서명의 사용, 개인적 프라이버시, 그리고 문서처리상의 안전성과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연방의회에 이를 보고한다.

1707항은 아래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전자서명의 집행가능성과 법적 효과

(2) 행정기관을 위한 전자서명서비스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공개로부터의 보호

(3) 國稅法 집행과 관련한 적용 예외들

(3) 1998년 정부문서감축법에 대한 평가

이를 정리해 보면 동법은 첫째, 정책과 관련하여, 운영예산처가 상업계, 산업계, 州政府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전자서명의 기술과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과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운영예산처는 전자서명이 문 제된 목적에 적합한 것일 정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하며, 또한

운영예산처는 전자기록보관시스템이 제출된 정보를 반드시 하자없이 보존할 수 있게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절차적인 문제로서, 어느 기술이 주어진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적합한가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위험평가, 지정고객의 평가 혹은 사용자의 필요에 기반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서명대안을 평가하는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단절된 활동으로 비춰지거나 그 자체가 목적으로 비춰져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위험도 평가는 정부문서감축법, 컴퓨터보안법, 정부업무수행결과법, 클링거-코헨법, 연방관리자재정통합법(Federal Managers Financial Integrity Act)과 최고재정담당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간에 상호연관된 요건들로부터 도출되고 또 다시 이 요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정부문서감축법 개정이 있는 지 1년 후인 1999년에 정부문서감축법의 시행세칙(Propose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sup>15)</sup> 운영예산처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시행세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동법 시행의 절차와 정책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연방 정보관리자들에게 실제적인 시행지침을 제공할 의도로 만들어졌다.

## 5. 1999년의 정부문서감축법 시행규칙(Propose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sup>16)</sup>

### (1) 제정 배경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행정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유지하고 공개하는 이들에게 늦어도 2003년 10월 21일까지는 그러한 정보를 가능하다면 종이 대신 전자형태로 제출·유지·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전송자의 신분확인과 전자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신원확인, 즉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하고

15) 이 시행세칙 全文은 <http://cio.gov/gpeafin.pdf> 참조.

16) 원문은 <http://cio.gov/gpeafin.pdf> 참조.

있다. 동법은 전자기록과 그에 관련된 전자서명들은 그것들이 전자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과, 유효성, 집행가능성을 거부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1998년 문서감축법에 대한 예산운영처의 시행규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면서 어떤 특정의 행정기관이 특정 분야에서 동법의 시행에 조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실제적인 시행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 (2) 주요 규정

### 제 2 항 (Section 2). 절차들

b. 주어진 상황에 어느 기술이 적절한가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위험평가와 대상으로 한 고객이나 사용자의 필요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서명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평가의 수행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활동이나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 의한 이 위험평가들은 문서감축법, 컴퓨터보안법, 정부업무수행결과법, 코링거-코헨법, 연방운영자들의 재정통합법(Federal Managers Financial Integrity Act), 선임재무공무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 법들의 운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 제 3 항 (Section 3). 행정기관의 책임들

a. 보다 향상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로의 원만하고 비용절약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행정기관은 프로그램책임에 관한 전략적 정보기술계획들내에 종이 대신 선택적인 전자적 정보의 유지, 제출, 공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실행가능하다면 전자서명을 포함하며 2003 회계연도까지 그러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 행정기관들은 이미 운영예산처의 M-99-2에 의해 요구되어진 연방수입과 지출에 관한 그들의 보고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 (3) 동 시행규칙에 대한 평가

운영예산처가 마련한 이 문서감축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1998년 문서감축법의 주요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들이 세밀히 규정되게 되었고, 각 연방정부기관의 연방공무원들에게 1998년 문서감축법 시행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주게 됨으로써, 동법 시행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게 되어 동법의 시행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제 3 절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Computer Security Act, Public Law 100-235)<sup>17)</sup>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은 연방 상무성 산하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립표준기술청)를 통해 이미 입안되어졌거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컴퓨터 보안장치들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이 없이 연방컴퓨터시스템들의 최소한의 수용가능한 컴퓨터보안 관행들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내었다. 동법은 각각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연방 컴퓨터시스템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은 “절대적 보안” 보다는 “비용절감적 컴퓨터 보안”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극히 현실적이다. NIST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법 제3항은 컴퓨터기준프로그램의 확립(Establishment of Computer Standards Program)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제3항 제3호는 NIST가 연방정부 내에서 연방 컴퓨터프로그램상의 민감 정보들의 비용절감적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기술적, 실제적, 행정적 기준들과 가이드라인들을 개발할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NIST는 다른 정부부처나 개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 제3항 제3호 등에 따라 개발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효율성을 평가할 장치들과 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들을 만들어낼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17) 전체 법규정의 원문은 <http://www.epic.org/crypto/csa/csa.html> 참조.

## 제 4 절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Public Law 103-62)<sup>18)</sup>

### 1.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의 의의

이 1998년의 미국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은 미국 연방의회 103회기에 제정된 법이다. 연방정부의 전략적 계획수립과 업무수행측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앞에서 상술했던 문서감축법과 더불어 중요한 전자정부 관련법제이므로 첫 조문부터 시작해서 완역을 시도해본다.

### 2.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 원문

제 1 항. 법의 명칭.

이 법은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이라 부른다.

제 2 항. 의회의 발견사항들과 입법목적들

(a) 의회의 발견사항들

(1) 연방프로그램들에서의 낭비와 비효율은 미국정부에 대한 미국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중요한 공공의 필요를 역점을 두어 다른 연방정부의 능력을 반감시킨다.

(2) 연방정부 연방프로그램의 운영자들은 프로그램 목표들의 불충분한 순환과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부적절한 정보 때문에 그들이 맡고있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그들 자신의 노력에 심한 불이익을 받는다.

(3) 의회에 의한 정책결정, 지출결정, 프로그램조사는 연방프로그램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불충분한 주의집중에 의해 지장을 받게 된다.

---

18) 원문은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03:SN00020:|TOM:bss/d103query.html> 참조.

(b) 입법 목적들

(1) 달성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해 관련 연방기관과 그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연방정부의 능력에 대한 미국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

(2) 프로그램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들에 근거해 연방프로그램의 수행도를 측정하고, 그 진척도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

(3) 업무수행결과, 공공서비스의 질, 고객만족도에 새로운 포커스를 맞추어 연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

(4) 연방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프로그램 목적들을 달성할 계획을 세우게 하고 프로그램 결과와 서비스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서비스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

(5) 입법목적의 달성, 연방프로그램과 연방지출의 상대적 효율성에 대한 보다 더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에 의해 의회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6) 연방정부의 내적 운영을 개선하는 것.

제 3 항. 전략적 계획수립

합중국 연방법령집 제3장 제5조는 305항 뒤에 다음의 새로운 항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개정한다.

제306항. 전략적 계획들

(a) 1997년 9월 30일까지, 각 행정기관의 長은 운영예산처장(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의회에 각 기관의 프로그램 활동의 전략적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러한 계획은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1) 그 행정기관의 주요 기능과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임무사항

(2) 업무수행결과에 관련된 목표들과 같이, 그 행정기관의 주요 기능과 운영을 위한 일반적 목표들

(3) 운영과정, 기술, 人的 정보, 기타 업무 목표들의 달성에 요구되어 지는 다른 소스들과 같이, 어떻게 그 업무목표들이 달성되는가에 대한 記述

(4) 본 연방법령집 31조 1115(a)에 의해 요구되어진 계획에 포함된 업무수행 목표들이 어떻게 전략적 계획의 일반적 목표들에 관련되는지에 관한 記述

(5) 일반적 목표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행정기관 외적 요소들 확인

(6) 미래의 프로그램평가와 함께, 일반적 목표들의 설정이나 그 수정에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記述

(b) 전략적 계획은 그 계획이 제출된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상의 기간을 커버하고 적어도 3년에 한번씩 보완되고 개정된다.

(c) 연방법령집 31조 1115항에 의해 요구되어진 업무수행계획은 행정기관의 전략적 계획에 부합한다. 업무수행계획(performance plan)은 현재의 전략적 계획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회계연도 동안에는 제출될 수 없다.

(d) 전략적 계획들을 개발함에 있어, 행정기관은 연방의회에 의견을 가하며, 그 계획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나 그 계획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체들의 견해를 모으고 이를 참작한다.

(e) 이 項에 열거된 기능과 활동들은 정부고유의 기능으로 고려된다. 이 항하에서 전략적 계획들을 만드는 것은 연방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f) 이 항의 목적에 의하여 ‘기관(agency)’이라는 용어는 105항에 정의된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을 의미하며, 중앙정보국(CIA),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파나마해협 위원회, 연방채신부, 우편요금위원회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 4 항. 연도별 업무수행계획과 그 보고

(a) 예산 내역과 의회에의 제출

연방법령집 31조 1105(a)는 다음의 새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개정된다.

(29) 1999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1115조에 규정된 예산 전반에 관한 연방정부 업무수행계획

(b) 업무수행계획과 보고

연방법령집 11장의 31조는 1114항 뒤에 다음의 새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한다.

1115항. 업무수행계획

(a) 1105(a)(29)의 규정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예산처장은 각 행정기관이 연도별 업무수행계획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때 연도별 업무수행계획은 그 행정기관의 예산에 규정된 각각의 프로그램 활동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프로그램 활동에 의해 달성될 업무수행 수준을 정의하는 업무수행 목표를 세울 것.

(2) 아래의 (b)에 의해 대안적 형태로 존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으며 측정가능한 형태로 그러한 목표들을 표현하는 것.

(3) 운영절차, 기술, 인적 정보 혹은 업무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른 소스들에 대해 간략히 기술할 것.

(4) 산출성과, 서비스 수준, 각각의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성과지표들을 세우는 것.

(5) 실제의 프로그램 수행결과를 업무수행 목표와 비교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것.

(6) 측정된 가치들을 증명하고 유효화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들을 기술할 것.

(b) 운영예산처장과의 협의 후에 특정 프로그램 활동의 수행목표들을 객관적, 정량적, 측정가능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행정기관이 판단하면, 운영예산처장은 대안적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 대안적 형식은

(1) 다음에 관한 별도의 記述들을 포함한다.

- (A) (i) 최소한도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 (ii) 성공적 프로그램, 혹은
- (B) 운영예산처장이 허가한 代案

충분한 정확성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활동의 수행이 그 記述된 기준들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가능케 하는 용어들로 규정되어야 한다. 혹은

(2) 업무수행 목표를 프로그램 활동의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왜 실행 불가능한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c) 이 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은 프로그램 활동들을 모으거나 분해하거나 혹은 결합할 수 있다. 단, 어떤 결합이 그 행정기관의 주요 기능이나 운영을 구성하는 어떤 프로그램 활동의 중요성을 훼손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행정기관은 그 연례업무수행계획과 함께 다음에 관한 계획의 일부를 커버하는 부록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상의 이익 때문에 국가기밀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의해 확립된 기준하에서 특정적으로 그 권한을 인정받은 사항, 그리고

(2) 그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화되는 사항

(e) 이 항의 기능과 활동들은 고유한 정부기능들로 고려된다. 이 항하의 업무수행계획들의 수립은 연방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f) 이 항과 1116항에서 1119항, 9703항과 9704항을 위한 용어 定義.

(1) ‘행정기관(agency)’은 5조 306(f)항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2) ‘성과측정(outcome measure)’은 원래 의도한 목적에 비교한 프로그램 활동 결과의 평가를 의미한다.

(3) ‘산출측정(output measure)’은 활동에 대한 도표작성, 계산, 혹은 기록을 의미하고 양적 혹은 질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4) ‘업무수행 목표(performance goal)’는 유형적이고 측정가능한 대상으로 표현된 업무수행의 목표수준을 의미하는데, 그것에 정량적 기준, 가치, 비율로 나타난 실제적 목표달성이 비교되어질 수 있다.

(5) ‘업무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산출이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가치나 특징을 의미한다.

(6) ‘프로그램 활동’은 프로그램과 미합중국 연방정부예산의 재정계획에 열거된 특징의 활동이나 계획을 의미한다.

(7) ‘프로그램 평가’는 객관적 측정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방프로그램들이 의도된 목표들을 달성하는 방식과 범위의 측정을 의미한다.

#### 제1116항. 프로그램 수행 보고

(a) 2000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후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前 회계연도의 프로그램 수행 보고서를 준비해 제출한다.

(b)(1) 각각의 프로그램 수행 보고서는, 그 회계연도 계획에서 설정한 업무수행 목표들과 비교된 실제 업무수행결과와 함께, 1115항 하의 행정기관 업무수행 계획에서 확립된 수행 지표들을 규정한다.

(2) 만약 1115(b)에서 규정한 대안적 형식으로 업무수행 목표가 특정된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들은 그러한 특정사항들과 관련해서 기술되는데 이 때 그 특정사항들이란 예를 들어 그 업무수행이 적어도 효과적이거나 혹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c) 2000 회계연도 보고서는 前 회계연도의 실제 결과를 포함하고, 2001 회계연도 보고서는 그전 두 회계연도의 실제결과를 포함하며, 2002 회계연도 보고와 모든 후속적 보고들은 그전 세 회계연도의 실제 결과들을 포함한다.

(d) 각각의 보고는

(1) 그 회계연도의 업무수행 목표 달성의 성공여부를 심사하고  
(2) 그 보고서가 커버하는 회계연도의 업무수행 목표들에 대해 실제로 달성된 업무수행과 관련된 현 회계연도의 수행계획을 평가한다.

(3) 업무수행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곳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기술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활동의 수행이 1115(b)(1)(A)(ii)의 성공적 프로그램 활동의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결정할 때, 혹은 다른 대안 형식이 사용되어졌다면 상응하는 목표달성의 수준)

(A)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이유

(B) 확립된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

(C) 만약 업무수행 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면 왜 그러한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4) 이 條의 9703항 하의 면제사유의 사용에 대한 기술과 업무수행 목표 달성에 있어 그 효율성의 측정, 그리고

(5) 보고서가 커버하는 회계연도 동안 완성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e) 해당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연방의회에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가 제출되어진다면 3515항 하에서 요구된 연례재정보고에서 이 항하에서 매년 요구되는 모든 프로그램 수행정보를 행정기관의 長은 포함시킬 수 있다.

(f) 이 항의 기능과 활동들은 고유한 정부 기능들로 고려된다. 이 항 하의 프로그램 수행 보고를 만드는 것은 연방공무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1117항. 예 외

운영예산처장은 1년 지출이 2천만 달러 이내인 행정기관에게 이 조의 1115항 1116항, 5조 306항의 요건들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 5 항. 운영상의 책임과 융통성

(a) 운영상의 책임과 융통성

연방법령집 31조의 97장은 9702항 뒤에 다음의 새로운 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된다.

제9703항. 운영상의 책임과 융통성

(a) 1999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1115항 하에서 요구되는 업무수행 계획은 행정절차요건들의 면제제안들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면제제안들에는 업무수행 목표의 달성을 위한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책임에 대한 댓가로 이루어지는 인적 구성수준의 특정, 보상과 급여의 제한, 예산목표 분류20과 그 하부 분류 11, 12, 31 그리고 1105항 하에서 제출된 각각의 연예산 사이의 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과 금지가 포함된다. 1105(a) (29)항 하에서 업무수행계획을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있어, 운영예산처장은 어떤 면제제안에 대해서도 승인을 할 수 있다. 면제는 그 면제가 승인된 회계연도 시작시에 효과를 발생한다.

(b) (a)하의 그런 어떤 제안도 더 큰 운영상 혹은 조직상의 융통성, 재량, 권한으로부터 결과되는 업무수행의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한다. 그리고 어떤 면제로부터 결과하는 업무수행 향상의 기대치를 정량화 한다. 기대되는 향상들은 현재의 실제 업무수행과 비교되어질 것이고 어떤 면제와도 별도로 달성될 업무수행의 계획된 수준과도 비교되어질 것이다.

(c) 보상과 급여 제한을 푸는 어떤 제안도 업무수행 목표치의 충족을 이루거나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못 미치는 보상이나 급여 - 보너스나 상여금 등의 - 금액상의 금전적 변동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d) 행정기관(제안하는 행정기관이나 운영예산처 이외의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된 절차적 요건이나 통제의 면제제안은, 그 요건을 세운 행정기관에 의해 승인받지 않는다면 업무수행계획에는 포함될 수 없다.

(e) 면제는 그 면제를 승인하는 운영예산처장에 의해 특정된 바대로 1년이나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면제는 다음해 동안 갱신될 수도 있다.

면제가 그 후의 3년 동안 효력을 가진 후에, 1115항 항에서 준비된 업무 수행계획은, 보상이나 급여의 제한 면제 이외에 면제가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다.

(f) 이 항의 목적을 위해 115(f)하의 定義들이 적용된다.

#### 제 6 항. 선도계획들 (PILOT PROJECTS)

##### (a) 수행계획과 보고들

연방법령집 31조의 제11장은 1117항(이 법의 제4항에 의해 추가된) 뒤에 다음의 새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 제1118항. 업무수행 목표를 위한 선도프로젝트들

(a) 운영예산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長과의 협의 이후에 10개 이상의 행정기관을 1994, 1995, 1996 회계연도의 업무수행 측정에 있어서의 선도프로젝트로 지정한다. 그 선택된 행정기관들은 프로그램 수행도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능력과 정부기능의 대표적 영역들을 반영한다.

(b) 지정된 행정기관의 선도프로젝트들은 그 행정기관의 주요 기능과 운영과 과현하여 1115항 하의 업무수행계획의 준비, 1116(c)항 이외의 1116항 하의 프로그램 업무수행 보고의 준비를 떠맡는다. 1년 이상의 선도기간 동안 행정기관 업무수행계획을 준비할 때 전략적 계획이 사용된다.

(c) 1997년 5월 1일까지, 운영예산처장은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때 대통령과 의회는

(1) 선도 행정기관에 의해 준비된 계획과 보고의 이익, 비용, 유용성을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의 목적에 대비시켜 평가한다.

(2) 계획과 보고를 준비하면서 선도 행정기관들이 경험한 중대한 난관들을 확인한다.

(3)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 규정들, 5조 306항, 이 條의 1105항, 1115항, 1116항, 1117항, 1119항, 9703항 상의 요건들에 있어서의 추천할만한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b) 운영상의 책임과 융통성

연방법령집 31조의 97장은 9703항(이 법의 5항에 의해 추가된) 뒤에 다음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9704항. 운영상의 책임과 융통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들

(a) 운영예산처장은 1995, 1996 회계연도의 운영상 책임과 융통성에 있어 5개 이상의 행정기관을 선도프로젝트로 지정한다. 그러한 행정기관은 1118항 항의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된 것들 중에서 선발될 것이며 프로그램 수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능력과 대표적 범위의 정부기능을 반영한다.

(b) 지정된 행정기관의 선도프로젝트는 그 행정기관의 하나이상의 주요 기능과 운영을 위해 9703항에 따라 만들어진 제안된 면제(권리포기)를 포함한다.

(c) 운영예산처장은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include in the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o the Congress required under section 1118(c)항에 의해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킨다.

(1) 면제를 통한 향상된 업무수행의 대가로 얻게 되는 증가된 운영상·조직상의 융통성, 재량, 권한의 유용성, 비용, 이익의 평가

(2) 제안된 면제를 준비함에 있어 선도프로젝트들이 경험한 중요 난관의 확인

(d) 이 항의 목적을 위해 1115(f)항 하의 定義들이 적용된다.

(c) 업무수행 예산수립

연방법령집 31조의 11장은, 1118항(이 법 제6항에 의해 추가된) 뒤에 다음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제1119항. 수행예산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들

(a) 운영예산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長과 협의한 후에 5개 이상의 행정기관을 1998, 1999 회계연도 업무수행 예산수립의 선도프로젝트들로 지

정한다. 적어도 그 중 세 개의 행정기관이 1118항 항의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된 기관들 중에서 뽑히며, 이 기관들은 프로그램 수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능력과 대표적 범위의 정부기능을 반영한다.

(b) 지정된 행정기관의 선도프로젝트들은 업무수행 예산의 준비를 포함한다. 그러한 예산들은 그 행정기관의 하나이상의 주요한 기능과 운영을 위해, 산출과 관련된 업무수행과 같이 변화하는 수준의 업무수행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 계상금액으로 부터 나온다.

(c) 운영예산처장은 1999 회계연도를 위해 1105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에서 대안적 예산 제시의 하나로, 이 회계연도의 지정된 행정기관들의 업무수행 예산들을 포함시킨다.

(d) 2001년 3월 31일까지, 운영예산처장은 업무수행 예산책정 선도프로젝트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선도프로젝트는

(1) 1105항에 의해 제출된 연예산의 일부로서 업무수행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업무수행예산을 준비함에 있어 선도행정기관이 접하게 된 난관들에 대해 기술한다.

(3) 업무수행예산을 요구하는 입법이 제안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권고한다.

(4)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 5조 306항, 이 條의 1105, 1115, 1116, 1117, 9703항, 그리고 본항상의 다른 요건들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와 개정논의에 대해 설명한다.

(e) 위의 (d)에서 요구된 보고서의 수령 후에, 연방의회는 업무수행예산이 1105항 하에서 제출된 연예산의 일부로 제출됨을 특정할 수 있다.

제 7 항. 미합중국 우편서비스

제 8 항. 의회의 검토와 입법

제 9 항. 훈 련

제10항. 동법의 적용

제11항. 기술적이고 순화적인(CONFORMING) 개정들.

### 3. 주요내용과 평가

정부업무수행결과법(GPRA)은 연방프로그램들과 연방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을 도우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중요한 전자정부 법제이다. 동법은 연방의회와 연방집행부가 연방정부서비스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출을 승인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관련된 입법부나 집행부의 일들을 감독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은, 예산의 책정·지출·승인의 사이클에 연결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의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에 기초하게 될 전략적인 연례계획입안절차(a strategic and annual planning process)의 채택을 강제한다.

동법 제3항은 그 전략적 연례계획(Strategic Planning)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제3항 (a)는 늦어도 1997년 9월 30일까지 각 행정기관의 長이 운영예산처장(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연방의회에 연방프로그램활동의 전략적 계획을 제출하게 하면서 그러한 전략적 계획의 범위에 관해 다시 몇 가지 세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제(3)이 “그러한 연방프로그램의 작동절차를 포함하여 연방프로그램의 목표들이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목표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人的·物的 그리고 여타의 자원들에 대한 記述”이고 제(6)이 “장래의 연방프로그램 평가 스케줄과 함께 연방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표들을 만들고 개정해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記述”이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위에서 본 정부문서감축법의 주된 수행기관인 “운영예산처(OMB)”가 동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무부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례업무수행계획과 그 보고(Annual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항도 중요하다. 세부조항1115는, 운영예산처장이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행정기관의 예산에 책정된 각각의 연방프로그램 활동을 포함하는 연례업무수행계획의 준비를 각각의 행정기관에 요구하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례업무수행계획은, 첫째, 연방프로그램활동에 의해 달성된 업무수행 성과의 레벨을 명백히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성과목표들을 확립하고(1호), 둘째, 그러한 목표들을 객관적,

定量적(quantifiable), 計量的(measurable)인 형태로 明示하고(2호), 셋째, 성과목표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작동절차, 기술, 人的·자본적 정보와 다른 소스들에 대해 간략히 묘사하고(3호), 넷째, 각각의 연방프로그램활동과 관련된 산출물·결과와 연방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업무수행 성과지표를 확립하며(4호), 다섯째, 실제 연방프로그램 수행 결과들을 미리 정해놓은 성과목표들과 비교함에 필요한 기초들을 제공한다(5호).<sup>19)</sup>

### 제 5 절 1993년 9월 11일의 고객서비스기준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12862호<sup>20)</sup>

#### 1. 입법 배경

1993년 행정부에 의해 행정명령으로 고객서비스기준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12862호가 공포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사기업에 있어 그 업계의 최상의 서비스를 모델로 삼아 행정부가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을 계획수립과 그 점검을 통해 수시로 평가하고 확인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고객이라 생각 대국민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2. 주요 내용

중요한 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행정기관들은 이 행정명령에 마련된 고객서비스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19) 행정기관의 연례업무수행계획과 관련하여, 그 후 1993년 9월 11일에 행정명령 12862호로 공포된 고객서비스기준지침(Setting Customer Service Standards)은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계획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계획성취도에 대한 보고서 운영예산처와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규정했다. 동 지침의 전체원문을 보려면 <http://www.pub.whitehouse.gov/uri-res/I2R?urn:pdi://oma.eop.gov.us/1993/9/14/3.text.2> 참조.

20) <http://www.pub.whitehouse.gov/uri-res/I2R?urn:pdi://oma.eop.gov.us/1993/9/14/3.text.2> 참조.

- (a) 그 행정기관에 의해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국민고객들을 확인한다.
- (b) 국민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고객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 (c) 대국민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한다.
- (d) 그 업계의 최상서비스에 국민고객서비스 수행을 벤치마킹한다.
- (e) 그 업계의 최상서비스 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선의 공무원들을 통해 조사한다.
- (f) 서비스 소스와 전달 수단에 있어 국민고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
- (g) 정보, 서비스, 그리고 고충탄원 시스템을 이용가능하게 한다.
- (h) 국민고객의 고충을 처리할 수단들을 제공한다.

### 3. 평 가

이외에도 이 행정명령 조항들은 또한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국민고객 서비스 계획(Customer Service Plan)”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계획의 성공여부를 측정할 평가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계획의 달성 정도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의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 6 절 1996년의 연방정보자원들의 운영에 관한 정부회람 A-130<sup>21)</sup>

### 1. 제정 배경

정부회람 A-130은 연방법령집 44조 35장에서, 1980년의 정부문서감축법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1995년의 정부문서감축법에 의해 개정된, 통일정부정보자원 운영정책들에 대한 통일안을 규정했다.

21) 원문은 <http://www.whitehouse.gov/WH/EOP/OMB/html/circulars/a130/a130.html> 참조.

## 2. 주요 규정 내용

### 8. 정책편:

#### a. 정보운영정책

##### 1. 정보운영계획

행정기관들은 정보운영의 통합된 방식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행정기관들은

(a) 정보 수명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정보 수명 사이클의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나 조치의 효과 특히 정보 보급과 관련한 결정이나 조치의 효과에 관해 고려한다.

(e) 예산편성, 정보기술의 습득과 사용 등과 같은 정보자원의 배분과 사용에 관한 계획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계획을 통합한다.

#### b. 정보시스템과 정보기술운영

##### 1. 평가와 업무수행측정

행정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연방정보자원의 적절한 적용을 촉진한다.

(a) 업무과정의 재설계와 정보기술의 정보기술의 현명한 적용을 통해 정부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기회들을 탐색한다.

(b) 각 정보시스템의 이익-비용 분석을 준비하고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필요한 만큼 경신한다.

### 9. 책임의 양도편:

#### c. 통상부

통상부장관은

4. 원격통신기술, 연방원격통신시스템의 개선, 확장, 점검, 운영, 사용에 관한 연구와 평가를 행하고 그러한 연구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 운영예산처장이나 적당한 행정기관에게 보고한다.



### 3. 평 가

동 회람은 연방정부의 정보자원 운영에 있어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 내었으며 책임의 양도면에서는 특히 통상부장관이 원격통신과 관련한 연구와 평가를 행하고 여기서 습득한 지식이나 결과를 다른 해당 행정기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 전체를 정보자원운영과 관련해 하나로 체계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 제 7 절 1996년의 정보기술관리개혁법(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일명 클링거-코헨법, Public Law 104-106)<sup>22)</sup>

##### 1. 입법 배경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은 연방정부의 정보기술(IT) 관리에 관해 정할 의도로 규정되었다. 이 법에 관해서는 위의 1998년 정부문서감축법에서도 인용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개관해 본다.

##### 2. 주요 내용

연방정부의 IT관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갖기 위해, IT의 습득과 IT에의 투자를 위한 자본계획의 사용, 연방정부 부처들에서의 최고정보담당관(Chief Information Officer)제의 확립, IT 성과 측정의 요건들을 포함하여 동법은 여러 수단들을 사용한다. 운영예산처장은 연방정부가 취득한 IT의 검토와 관리를 위한 궁극적 책임을 진다.

특히 5112항은 자본계획과 투자통제(Capital Planning And Investment Control)에 관한 것으로서 (b)는 연방프로그램에서의 정보기술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면서, 운영예산처장은, 연방프로그램의 생산성과 효율

22) 원문은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04:SN01124:|TOM:/bss/d104query.html> 참조.

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公的 정보의 보급과 공공의 정보수집부담 경감을 통해,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습득, 사용, 처리를 증진하고 이를 향상시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본 항 (f)는 IT 습득을 위한 최선의 관행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면서, 운영예산처장이 각 행정기관의 長들을 고무시켜 IT의 습득을 위한 최선의 관행들을 개발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다.

5113항은 성과기반 관리(Performance-Based Management)와 결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에 관해 규정하면서, (a)의 일반조항에서는, 운영예산처장이 미연방법령집 44조(권) 3504(h)항에 따라 부여받은 책임들을 완수함에 있어 성과기반 관리와 결과기반 관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同項의 (b)는 행정기관 프로그램의 평가와 투자에 관해 규정하면서 (1)에서 그 요건으로, 운영예산처장은 정보기술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의 성과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정보자원 관리를 평가하게 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행위감독에 관한 (2)에서는, 운영예산처장이 행정기관의 長에게 간결·명확한 지침을 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침에서 그 행정기관의 長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든 주요 투자들을 선택·관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본절차계획들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 3. 평 가

이 법은 이 법을 입안한 의원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클링거-코헨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법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IT관리에 있어서 운영예산처장의 통일적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든가, 행정기관의 각 행정부서에 최고정보담당관(CIO)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IT업무를 관할하게 한 것 등이 주목을 끈다. 또한 IT와 관련한 자본계획, 관리와 관련해서도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있어 미국의 중요한 전자정부관련법제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 제 8 절 1996년의 연방정보기술에 관한 행정명령 제13011호

그 후 같은 해인 1996년에 정보기술관리개혁법과 정부문서감축법, 정부업무수행결과법에 두루 관련된 연방정보기술(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에 관한 행정명령 제13011호가<sup>23)</sup> 발해졌는데 同 命令은 최고정보담당관위원회(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 정부정보기술서비스 위원회(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Board)와 정보기술자원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s Board)의 설립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동 명령은 최고정보담당관(Chief Information Officers, CIO)에게 정보자원관리의 총체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여 최고정보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고안, 개발,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長에게 조언할 책임들을 진다는 것이다. 이 책임들은 구체적으로, 첫째, 정보시스템 투자심사절차에 참여하고, 둘째, 적용가능한 업무수행수단들에 기초해 그 정보시스템을 평가하고 모니터하며, 셋째,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의 長에게 그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사용치 말도록 충고할 책임을 포함한다.

### 제 9 절 1996년의 전자정보자유법

1996년의 전자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Public Law 104-231)은<sup>24)</sup> 행정기관의 기록이나 정보에 공중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것을 장려했다. 동법은 정보자유법상의 “기록”의 개념을 “어떤 형태로든” 행정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기록으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기록공개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전자형태로 된 기록들에서 그 요구받은 기록들을 찾아내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을 경주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이

23) <http://www.pub.whitehouse.gov/uri-res/I2R?urn:pdi://oma.eop.gov.us/1996/7/17/2.text.2> 참조.

24)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04:HR03802:|TOM:/bss/d104query.html> 참조.

러한 전자정보자유법의 새 규정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미국무성은 과거에는 공개금지의 기밀 리스트에 올라 있었으나 이 전자정보자유법에 의해 기밀 리스트에서 삭제된 문서들 중 자주 공개가 요청되어지는 문서들에 公衆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근에 정보공개법 전자열람실을 “<http://foia.state.gov>”에 개설했다. 더욱이 이 전자열람실은 “정책, 행정 결정과 행정메뉴얼, 기타 공중에 영향을 끼치는 자료들” 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특별한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집정보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1999년 12월 31까지 디지털로 전환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전자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은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에 직접적 시한을 마련한 중요한 전자정부법제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제10절 1998년의 사회복지법 제508항

### 1. 입법 배경

연방법령집에는 29권(조) 794d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 제508항은 1998년 8월 7일에 제정되었다.

### 2. 주요 규정

#### (a) 연방정부기관들을 위한 요건들

##### (1) 접근가능성

##### (A) 전자정보기술의 개발, 획득, 유지, 혹은 사용

전자정보기술을 개발, 획득, 유지 혹은 사용함에 있어, 미합중국체 신부를 포함한 각각의 연방정부기관은 만약 부당한 부담이 그 연방기관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술매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전자정부기술이 다음을 허용함을 보장한다.

- (i) 장애자인 연방공무원의 정보와 데이터에의 접근과 사용이 장애자가 아닌 연방공무원의 정보와 데이터에의 접근과 사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게 한다.
- (ii) 장애자이면서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에의 접근과 사용이 장애자가 아니면서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와 데이터에의 접근·사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게 한다.

(B) 대안적 수단발견 노력

아래 (2)하의 접근위원회(Access Board)에 의해 간행된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전자정보기술의 개발, 획득, 유지, 혹은 사용이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일 때, 연방정부기관은 위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에게 정보와 데이터의 사용을 허락하는 대안적 접근수단들에 관계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2) 전자정보기술 기준들

(A) 총 론

1998년의 개정재활법 제정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 총무처장관, 통상부장관,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국방부장관, 그 외에 접근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長과 관계된 연구결과 등에 관해 협의한 후에, 전자정보기술산업,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조직 등을 포함한 적합한 공익기관 혹은 비영리기관과 협의한 후에, ‘건축과 수송 장벽 허가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여기서의 접근위원회 즉, ‘Access Board’로 명명됨)’는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

- (i) 1996년 코링거-코헨법 5002(3)항(40 U.S.C. 1401(3))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전자정보기술의 定義
- (ii) 위의 (1)에 규정된 요건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기능적 수행기준들

(B) 검토와 개정

접근위원회는 위의 (A)하에서 요구되어진 기준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전자정보기술상의 기술적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적합하다면 그 기준들을 개정한다.

(3) 기준들의 구체화

접근위원회가 위의 (2)하에서 요구되어진 기준들을 마련하여 공포한 후 6개월 내에, 연방획득규제위원회(Federal Acquisition Regulatory Council)는 연방획득규칙을 개정하고 각 연방행정기관은 그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연방획득정책들과 연방획득지령들을 개정한다. 접근위원회가 위의 (2)에서 요구된 기준들을 개정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위원회는 연방획득규칙을 개정하고 각각의 해당 연방행정기관은 필요하다면 그 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획득정책과 획득지령들을 개정한다.

(4) 획득계획 수립

획득과 관련하여 위의 (2)하에서 접근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기준들을 준수하는 것이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연방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획득을 지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서류작성은 왜 그러한 준수가 부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한다.

(5)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적용 배제

1996년의 클링거-코헨법 514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항은 국가안보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해석

(A) 설비 - 연방정부가 전자정보기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나 데이터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 항의 어떤 것도 연방행정기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i) 연방정부가 소유한 설비가 전자정보기술이 공중에게 제공되는

제 2 장 연방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위의 (1)에 포함되는 장애인들에 의한 접근과 사용에 제공되게 하는 것.

- (ii) 전자정보기술이 공중에게 제공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위의 (1)에 포함되는 장애인들에 의한 접근과 사용을 위한 설비를 구입하는 것.

(B) 소프트웨어와 주변장치들 - 위의 (2)하에서 접근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경우 이외에는, 위의 (1)상의 아무것도 접근가능성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접근가능성과 관련된 특정 주변장치의 부착을 장애인이 아닌 연방공무원의 작업장에 요구하지 않는다.

(b) 기술적 지원 - 총무처장관과 접근위원회는 이 항의 요건들에 관해 개인과 연방행정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c) 행정기관 평가 - 1998년의 사회복지법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연방행정기관의 長은 행정기관의 전자정보기술이 접근가능하고 위의 (a)(1)에 규정된 장애인에 의해 사용가능한 범위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해 접근·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하며 평가한다. 그리고 법무장관에 제출될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d) 보 고

(1) 중간보고 - 1998년의 사회복지법 개정일 후 18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연방정부의 전자정보기술이 접근가능하고 (a)(1)에 규정된 장애인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정보와 추천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2) 격년으로 제출되는 보고서 - 1998년의 사회복지법 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보고서를 준비해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는 (f)하의 개인적 고충탄원에 대한 조치와 같은 연방행정기관들이 이 항에 규정된 요건들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e) 협 조 - 접근위원회,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총무처 등 각 연방행정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이 판단하기에 (c)하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d)하의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한다.

(f) 시 행

(1) 총 론

(A) 고충탄원 - 1998년의 사회복지법 개정 후 2년간 유효하며, 어떤 장애인도 연방행정기관이 전자정보기술을 제공함에 있어 (a)(1)의 요건들에 따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그 연방행정기관을 상대로 고충탄원을 제기할 수 있다.

(B) 신 청 - 이 하부조항은 1998년의 사회복지법 개정일 2년 후에 연방행정기관에 의해 획득된 전자정보기술에만 적용된다.

(2) 행정상의 고충탄원 - (1)에 의해 접수된 탄원장(고소장)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연방행정기관에 접수된다. 고충탄원을 받은 연방행정기관은 연방이 수행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의 차별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504항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고충탄원절차를 신청한다.

(3) 민사소송들 - 505(a)(2)와 505(b)항에 규정된 구제들, 절차들, 권리들은 위의 (1)하에서 고충탄원을 제기하는 어떤 장애인에게도 이용가능한 권리구제, 절차, 권리가 된다.

(g) 다른 연방법들에의 적용 - 이 항은 이 항보다 더 크거나 같은 장애인 권리의 보호를 제공하는 연방법률(예를 들어 501항에서 505항)의 어떤 규정하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용가능 했을 권리, 구제, 혹은 절차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3. 동법에 대한 평가

1998년에는 사회복지법 제508항(Section 506 of Rehabilitation Act, 29 U.S.C. §794d)<sup>25)</sup> 규정되어, 행정기관들의 전자정보기술이

25) <http://www.usdoj.gov/crt/508/508law.html> 참조.



공무원이나 일반대중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에게도 접근가능한 것이 되게 했다. 또한, 동법은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획득·보관·사용되는 전자정보기술의 요건들을 규정했다. 연방 법무장관은 현 전자정보기술 시스템의 접근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방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이를 통고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행정기관들은 그들 정보기술의 접근가능성을 평가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2000년 2월 7일까지 농산물수송장벽확인담당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는 기술적·기능적 업무수행기준들을 규정함으로써, 어떤 전자정보기술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또 “접근가능한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그 기준들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이후에 신체장애인들의 정부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관련하여, 신체장애인들의 정보사용에 대한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신체장애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미국 정부정보수용센터(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Center on Information Technology Accomodation)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자는 문자를 음성정보로 바꾸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든지 확대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청각장애자는 음성을 문자정보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손이나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손이나 손가락 이외에 신체의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입력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 제11절 1998년 대통령 행정훈령 “연방기록상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이외에도 의회제정법률은 아니지만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몇몇 행정명령이나 행정지침, 훈령 등이 뒤따랐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8년 5월 14일의 대통령의 행정각서를 구체화한 행정훈령(Instructions on complying with President’s Memorandum of May 14, 1998)인 “연방기록상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26)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 더 자세히는 <http://www.gsa.gov/coca/cocamain.htm> 참조.

in Federal Records)”가<sup>27)</sup> 발해졌는데, 이 행정각서에서 대통령은 행정기관들이 그들의 현 정보수집 관행들을 심사하고 그것이 프라이버시법과 프라이버시정책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심사와 확인작업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운영예산처가 행정기관들에게 훈령을 발하게 하였다.

### 제12절 1998년의 연방웹사이트들을 위한 중요한 프라이버시 원칙들<sup>28)</sup>

이 각서(memorandum)는 연방 웹사이트들을 위해 고려되는 중요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강조한다. 운영예산처는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전반적 책임을 지며 운영예산처 회람 A-130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특정한 법적 책임을 진다. 그 외에도 대통령은 그 무렵 프라이버시와 연방기록상의 개인적 정보에 대한 각서를 발했는데 그 각서는 행정기관과 운영예산처의 장들에게 프라이버시 이슈들에 대해 추가적인 강조와 새로운 요구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연방웹사이트들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2. 웹사이트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지는 영향의 변화에 항상 발맞추어 간다.
3.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마다 적절한 ‘프라이버시 고지(privacy notice)’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 제13절 1999년의 전자기록운영에 관한 NARA 고시 99-04<sup>29)</sup>

이 고시는 어떤 행정기관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록들과 GRS 20, 13호(워드 프로세싱된 서류)와 14호(전자메일) 하에서 전에 계획된

27) <http://www.whitehouse.gov/WH/EOP/OMB/html/m99-05.html> 참조.

28) <http://www.itpolicy.gsa.gov/mke/fedwebm/privacy.htm> 참조.

29) <http://www.nara.gov/records/grs20/b9904.html> 참조.

행정계획의 전자문서에 의한 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고시는 계획된 기록들의 전자적 복사에만 적용된다. 이 고시에서 이야기하는 전자적 복사들이란 기록보관용 복사가 이루어진 후 그 컴퓨터시스템에 남게 되는, 워드 프로세서와 전자메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전자기록들을 말한다.

그러면 이 고시가 전자기록작업그룹(Electronic Records Work Group) 보고서와 다른 전자기록에 관한 쟁점들에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NARA는 행정기관간에 존재하는 전자기록작업그룹(Electronic Records Work Group, 줄여서 ERWG)을 조직했는데, 이 그룹은 일반기록계획(General Records Schedules)의 개정을 위한 적절한 영역들을 찾아내고, 기록의 전자적 복사를 가능케 하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 계획과 처리의 실제적 해결책들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1998년 9월 14일에, ERWG는 NARA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고시는 해당 행정기관의 해당공무원이 GRS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프로그램 기록들과 행정기록들을 모든 형식(formats)으로 계획해야만 한다는 작업그룹의 첫 번째 건의사항의 시행에 대한 기록보관인의 결정을 반영한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어떤 절차와 단계들을 밟아가야 하는가? 공무원은 2000년 2월 1일까지 그의 모든 전자복사를 아우르는 기록계획들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고시의 부칙 B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때까지 그 기록계획들을 제출할 수 없다면, 그 공무원은 그 때까지, NARA가 자신의 계획을 승인하고 나서 2년 내에, 혹은 11에 의해 NARA가 승인한 기간 내에, 전자적 복사를 규율하는 기록계획들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 제14절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

### 1. 입법 배경

2000년 6월 30일에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전세계적 전국적 통상에 있어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이후로는 약칭인 ‘전자서명법(E-Sign

Act)’을 사용)”에 서명함으로써 2000년 10월 1일부터 동법이 발효되게 되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전자적 서명, 전자적 기록, 전자적 계약 등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행위들에 그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률이었다. 물론,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州에서도 주법으로 규율하고 있었지만, 전자상거래에 관해 새로운 주법이 마련될 경우 이 주법의 모델법으로 제정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이 나오기 이전에도 1999년부터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수회에 걸쳐 개정되어 오는 과정을 밟았다.

(1) 1999년 3월 25일에 제정된 새천년디지털통상법(Millennium Digital Commerce Act)

이 법은 연방전자서명법의 母法이 된 것으로서, 연방정부가 국제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전자서명의 원칙들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약칭 UNCITRAL)에 의해 1996년에 채택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전(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상의 원칙들을 채택함으로써 종이문서에 기한 상거래에서 오는 여러 장애들을 제거해낼 수 있었고, 둘째,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셋째, 법정에서 그 거래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넷째 다른 주로부터의 전자서명에 대한 규율에 비차별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이 법은 전자서명이나 전자기록이 계약체결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州間 계약거래의 법적 효과가 부정되지는 않음을 연방법으로서의 최초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동법은 계약당사자들에게 州間的 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전자기록이 사용되는 방식들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아울러, 각 연방행정기관이 운영예산처장과 통상부장관에게 전자상거래에 장애가 되는 법이나 규칙 규정들을 보고하게끔 했고 통상부장관이 그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에 대해 연방행정

기관에 보고하게 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조문화 한 것으로 보인다.

### (2) 1999년 7월 30일에 개정된 개정새천년디지털통상법

새로이 다음의 사항들이 추가되는 법개정이 있었다.

첫째,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에 관한 상세한 규칙들을 더 많이 규정했고 州間 통상에 영향을 주는 상거래에도 그런 규칙들이 적용됨을 더 확실히 하였다.

둘째, 州間 통상에 영향을 주는 상거래에 있어 전자서명과 전자기록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에 합의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州間의 계약거래가 그 성립이 ‘전자적 매체(전자기록이나 전자적 업무수행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의 수단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다른 전자적 자동화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을 금했다.

### (3) 1999년 11월 19일에 개정된 새천년디지털통상법

이 법개정에서는, 州間 거래의 당사자들이 그들 거래에 사용될 적당한 전자서명기술과 그것들을 시행하는 수단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서명의 사용방식 등과 관련해 소폭의 내용 개정이 있었다.

## 2. 2000년 10월 1일에 발효한 연방전자서명법의 주요 규정

### 제 1 조 : 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기록과 전자서명

다음의 근거들에 의해 법의 지배가 州間이나 외국과의 거래의 법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을 금한다.

(1) 그러한 거래의 서명, 계약, 혹은 기록이 전자적 형식으로 되어있는 경우

(2) 계약과 관련해서 전자서명이나 전자기록이 계약의 형성에 사용되는 경우. 이 때 “거래(transaction)”는 2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재화, 서비스의 판매, 임대, 교환, 면허 기타 다른 처분을 의미한다.

제101항. 이 법은

(1) 계약이나 다른 기록들이 비전자적 형식으로 쓰여지고 서명되었다는 이유로 법하에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에게 (정부기관이 한 계약당사자인 경우 이외에 정부기관의 기록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을 사용하거나 수락하도록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자기록(혹은 전자서명)이 다음의 사항을 강제하는 어떤 법, 규칙, 혹은 다른 형태의 법규범을 충족시키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 (1) 문서화된 정보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정보의 문서화.
- (2) 계약이나 기록의 보존
- (3) 계약이나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을 것, 그리고
- (4) 기록이나 서명이 공증을 받았을 것.

제102항. 州法이나 州의 법규범이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법하의 전자상거래를 지배하는 유효한 일반규범을 변경시키거나 그것을 대신하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1) 1999년의 ‘통일주법에 관한 전국위원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in 1999)’에 의해 승인을 받은 통일상거래법전(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채택을 규정한 경우. (단, 州法에 의한 이 법에의 예외가 이 법과 충돌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이 법이 우선한다.)

(2) 이 법과 조화되는 계약이나 기록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의 사용이나 수락을 규정한 대안적 절차나 요건들을 특정하는 경우.

제103항.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다음의 것들을 제외시킨다.

- (1) 유언에 관련된 문서들(testamentary instruments)
- (2) 가족법의 사항들

제 2 장 연방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

- (3) 통일상법전하의 문서들
- (4) 法院의 문서들
- (5) 채권에 관련된 절차들, 그리고
- (6) 위험한 자료에 관련된 서류들

제104항. 이 법의 어떤 조항도, 기록들이 특정 기준이나 형식에 따라 만들어지고 접수되어야 함을 규정한 연방이나 주의 규제기관의 요건들을 제한하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한다.

제105항. 통상부장관이 다음의 사항에 관해 조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함을 지시한다.

- (1) 합중국 우편서비스와 사적 특급우편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문서 기록과 비교해, 전자기록들의 전자메일을 사용하는 고객들에의 전달의 효율성
- (2) 전자기록 사용에 대한 소비자 동의에 관한 이익과 부담

제 2 조 : 轉寫可能한 기록들 - 전자적으로 전사가능한 기록들의 통제에 관한 요건들을 규정한다.

제 3 조 :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촉진 - 장관이 주간의 통상과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 전자서명의 수용과 사용을 장려하게 한다.

제 4 조 : 온라인상의 아동보호위원회 - 온라인상의 아동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재산이나 서비스의 장차, 증여물의 수용, 사용, 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개정한다.

### 3. 동법의 주요내용<sup>30)</sup>

새천년디지털통상법은 근간으로 하는 연방전자서명법은 전통적인 법적 요건인 문서에의 서명이 전자적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으로 대체되는 확기

30)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06:SN00761:@@L&summ2=m&#summary> 참조.

적 반전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률이었다. 이 법은 서류는 서면이어야 하고 계약은 이 서면에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전자적으로 서명된 계약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이 법 101항은 계약이나 다른 기록들이 전자적 형식이 아니라 비전자적 형식으로 쓰여지고 서명되었다는 이유로 권리와 의무사항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별도로 어떤 사람에게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을 사용하거나 수락하도록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전자적 형식들은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유언에 관련된 문서들, 가족법의 사항들, 통일상법전하의 문서들, 法院의 문서들, 그리고 채권에 관련된 절차들을 제외시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105항은 전자서명의 사용 확산을 위해 통상부장관에게 전자서명에 관해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해야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장관이 주간의 통상과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 전자서명의 수용과 사용을 장려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연방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특정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서명은 일정한 절차 하에서 어떤 문구에 단순히 클릭만 하는 것 - 예를 들어 “I Agree”하는 박스에 클릭하는 것 - 사람의 지문, 음성, 동공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것, 손으로 쓰여진 서명을 촬영 등을 통해 디지털화 하는 것, 기타 이들을 결합한 것이 될 수 있다.

#### 4. 동법에 대한 평가<sup>31)</sup>

이 법은 여러 가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평가도 있었는가 하면 부정적 평가의 우려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 않게 높다.

31) Lawrence B. Lambert, *The New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How Effective Is It?* in <http://www.bipc.com/articles/electsigns.htm>.



(1) 긍정적 평가<sup>32)</sup>

2000년 10월 1일에 미국국민이 사업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 가장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연방전자서명법이 발효한 것이다. 부지불식 중에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기본적 방식이 21세기로의 새로운 거대한 도약을 한 셈이다.

연방전자서명법은 이제 州間의 혹은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의 거래행위가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전자적 형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 영역 안의 모든 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보장해준다. 비록 연방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의 사용에 몇몇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이 제한들의 대부분은 특정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있을 뿐이다. 특히, 이 법은 어떤 정보의 소비자들에게의 공개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 소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승낙이나 승낙 확인을 전자적 매체의 사용에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 전자계약상의 정보와 합의를 저장하고 이에 접근하는 전자적 매체의 사용을 요구한다.

이 법의 효과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은 “이 획기적인 입법으로 ..... 온라인계약은 이제 문서에 의한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sup>33)</sup>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다. 이 법안에 부수한 상원보고서는 또한 “이 법은 또한 회사가 전자적 계약을 신뢰할 수 있고, 상대방 계약당사자가 단지 그 계약이 인터넷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상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sup>34)</sup> 적음으로써 연방전자서명법을 둘러싼 입법 당시의 의회의 정서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미합중국의 개인들과 회사들이 그들의 집이나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고 세계전역과 사업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32) 이 긍정적 평가에 해당하는 예로 John S. Stolz and John D. Cromi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n <http://www.cfglaw.com/articles/oneclick.html> 참조.

33) *Statement by President William J. Clinton Upon Signing H.R. 2130*, 36 Weekly Comp. Pres. Doc. 1560 (June 30, 2000).

34) SENATE REPORT. No.106-131 at 2 (1999), 1999 WL 555831.

는, 소비자들이나 사업주들은 잠재적으로 미합중국의 어느 주에서나 그들로 하여금 집행절차를 밟게 하는 구속적 계약에 부주의하게 휘말리게 됨을 경계해야 한다.

이 법은 무엇이 “전자서명”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 단지 “계약이나 다른 기록에 덧붙여지거나 이와 논리적으로 관련된 전자적 소리, 상징, 혹은 절차, 그리고 그 기록에 서명할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 시행되고 채택되어진 전자적 소리, 상징, 혹은 절차”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따라서, 버튼에 단지 클릭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의도로” 그랬느냐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하나의 계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인간”을 대신해 구속력있는 전자계약을 체결해 낼 수 있는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동법은 “전자적 대리인”을 “거래행위나 응답 시에 개인에 의한 검토나 행위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거래행위를 시작하거나 전자기록이나 전자적 수행에 응답하는 데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적 수단 혹은 다른 자동화된 수단(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independently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electronic record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action by an individual at the time of the action or response)”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전자 유충들(e-bots)”이 인터넷에서 우리의 명령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들 자신을 의도하지 않은 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몇몇 예외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들에는 유언서, 유언보족서, 유언신탁, 입양, 이혼, 그리고 다른 가족법의 사항들, 통일상법전(UCC)의 2조 1-107항, 1-206항, 2A조의 규율을 받는 계약들 이외에 통일상법전의 규율을 받는 계약들. 통일상법전 2조와 2A조가 재화의 판매를 규율한다면, 이 예외는 특히 인터넷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큰 허점을 갖게 된다. 특정 예외들의 완전한 리스트는 ‘연방법령집 15권(조) 7003항(15 U.S.C. §7003)’에 규정되어 있다.

요약하면, 사실상 고객 하나하나가 연방전자서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 법의 기본적 용어들에 모두 친숙해져야 한다. 전자서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제 우리는 “동의합니다”란을 클릭할 때 우리가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웹사이트들에 게시된 공개설명들 (disclosure statements)을 잘 숙지해야만 한다. 더구나,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회사 종업원의 대부분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고객들은 이 종업원들이 권한없이 인터넷상에서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주의깊게 감시해야만 하며 계약 상대방은 어느 종업원이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명백히, 이런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연방서명법의 효과의 전부는 수년 내에는 금방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이 그 법규정에 의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만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연방전자서명법의 함정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어야 한다.

## (2) 부정적 평가<sup>35)</sup>

연방전자서명법은 중요한 입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언론들이 설파하고 있는 것만큼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입법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학자들에게서 받고 있다. 그 법은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혁명적인 것은 아니며, 전자서명이나 전자서명 사용을 가능케 하는 기반구조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을 시장에 넘겨주기만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심스러우면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이기까지 한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전자서명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動因으로서 ‘법’이 아니라 ‘시장’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

35) 부정적 평가의 한 예로 Bill Zoellick, *Electronic Signatures: Commentary on 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n <http://www.fastwater.com/Library/B2BEconomy/DigitalSigs/DigSig-Co mmentary-fr.php3> 참조.

이들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단순히 법을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업 운영자들은 또한 전자서명과 관련된 위험과 이익을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들은 전자서명과 관련된 사기를 예방하고 전자서명의 고지되지 않은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잠재적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들은 전자서명 제도에 관해 확실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은 언제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을 합당하게 하는가에 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전자서명법의 통과와 관련한 과대선전들은 고객이 이제는 문서에의 서명 대신에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차를 사고 집을 얻고 그 외의 수많은 중요한 거래행위들을 함에 있어 자유롭게 그들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새 시대가 갑자기 도래했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전자서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업운영자들로 하여금 언제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사업운영자는 또한 전자서명기술과 그 기반구조를 각각의 특정한 전자서명에서만 고유하게 발생 하는 비용, 위험, 이익에 맞추어야 한다.

## 5. 연방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와의 관계

이 연방전자서명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린다. 하지만, 연방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법의 규율을 받는 거래(transactions)의 개념에서 정부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로 정부의 목적을 위한 개인당사자의 행위와 정부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이 연방전자서명법은 아직까지는 “전자정부 실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이라기 보다는 개인간의 사적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전자서류 작성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이어서 “전자정부 실현”과는 아직까지는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있어 이 사적 거래에서의 전자서명 등을 규율하는 연방전자서명법이 전자정부로의 이행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공적 문서 등에 있어서의 전자

서명의 규율법률로서 일부 준용되거나 혹은 그러한 법의 제정에 결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연방전자서명법은 앞으로의 전자정부법제의 발전에 있어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그 좋은 실험장과 모델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 제15절 소 결

이상에서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들에 대해 법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일별해 보았다. 이러한 연방법제들은 하나같이 전자정부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 문서감축이 그렇고 업무수행에 대한 전자적 평가와 정보의 수집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입법무인 연방의회가 만든 연방법률보다는 집행부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대통령 훈령, 행정명령, 고시 등 행정부가 발하는 행정규범이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그 내용면에서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행정규범들은 기술적으로도 더 상세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로, 행정부의 행정규범 제정절차가 연방의회의 입법절차보다 더 간소하고 신속하다는 점이 그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Clinton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전자정부관련 행정규범이나 의회 법제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전자정부관련법제의 행정부나 의회에서의 제정 노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Clinton대통령과의 여러 정책적 차별을 강조하는 공화당 출신 Bush대통령이 앞의 정권과는 달리 전자정부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직 속단이라고 본다. 특히 Bush 대통령이 여러 연방정부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정비와 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평가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 3 장 이들 연방 전자정부법제들의 시행 이후

### 제 1 절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의 개념

이들 연방 전자정부법제들의 시행 이후에 “전자정부”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디지털정부”의 개념이 발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Gary Locke주지사는 “단지 온라인 관료주의를 재생산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적 기능들에 명백한 지름길을 제공치 못하는 혼란스럽고 정체된 웹사이트들을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없다”고<sup>36)</sup> 말한 바 있다.

디지털정부란 온라인 정부서비스를 의미하는 전문용어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서비스가 시민에게 보다 더 접근가능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공공정책 입안·집행자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더 빨리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정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진작시키고 통치자와 국민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정부란 오래되고 낡은 관료적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내내 이용가능한 데스크탑 컴퓨터로부터 직접 나오는 정보 및 서비스와 대체하는 것이며 이 때 디지털서명, 전자서식과 같은 강력한 새 기술들이 사용된다. 그것은 정부서비스를 한번의 시도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one-stop-shop”이다. 디지털정부는 정부서비스로의 접근 과정을 즉각적이고 단순하며 일사천리의 절차로 만들어준다. 그것은 정부내의 문서감축과 그로 인한 비용감소를 정부서비스의 직접 전달에 전환할 수 있게 한다. 결국, 디지털정부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건 안되건 모든 부류의 국민들에게 서비스전달을 개선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더 많은 국민들을 온라인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전통적인 대국민서비스 영역에 남아있는 국민들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6) <http://www.wa.gov/dis/role/whatisdiggov.htm> 참조.

## 제 2 절 연방사이트들의 등장

### 1. 연방정부에의 접근을 위한 FirstGov<sup>37)</sup>

#### (1) FirstGov의 설립과 그 취지

FirstGov는 凡行政機關委員會(cross-agency board)에 의해 이끌어지고 총무처내의 FirstGov국에 의해 운영되는公私합작 운영체이다. 그 업무는 기존의 전통적 범위의 정부업무를 뛰어넘어 세계를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연결시킴을 그 취지로 한다.

2000년 9월에 시작되었는데, 4,700만페이지의 방대한 양에 이르는 연방 정보,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상의 의사소통 기록을 가진 미국 연방정부의 유일한 공식 포털사이트였다. 이 사이트는 모든 미국 연방정부 서류상의 모든 단어를 0.25초 정도만에 찾아내는 강력한 검색엔진을 제공한다. FirstGov.gov는 또한 토픽별(농업과 식량, 예술과 문화, 복지수당, 사업과 경제, 소비자서비스와 안전, 안보와 세계문제, 교육과 직업, 환경과 에너지, 건강, 가정과 공동체사회, 돈과 세금, 오락과 여행, 과학과 기술) 색인, 온라인 공무처리, 주정부와 연방정부로의 링크들, 연방정부에 접촉하기 위한 조건들, 그 이외에 언제이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그 정부기관의 이름을 알 필요없이 얻을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이 사이트는 우수사이트로 상을 받은 적도 많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이트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그 첫 번째 존재이유로 한다.

이 사이트는 아동, 근로자, 노인 등을 위해 이미 만들어진 특정 행정기관 사이트들을 하나로 묶어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이 사이트는 모든 레벨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국민이 정부와 상호접촉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2) 재 정

FirstGov는 연방정부의 최고정보담당관위원회와 다른 22개 연방행정기관으로부터 2000년에 기금을 받아 만들어졌다. 그리고 Fed-Search

37) <http://www.firstgov.gov/index.html> 참조.

Foundation과 같은 비영리자선단체로부터 검색엔진을 제공받기도 했다. Bush 대통령은 2002년 연방예산편성에 있어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위한 FirstGov의 역할을 인정하고 앞으로 3년간 전자정부, 시민중심의 정부의 구현을 위해 1억불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 그의 이러한 선언은 그가 FirstGov.gov를 궁극적으로 전자서명을 위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 structure)’ 구축건설의 프로젝트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 중의 하나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3) 주요 세부 이용항목들

온라인서비스란에는 e-Citizen, e-Business, e-Government의 하부 항목들이 있다. “E-citizens”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들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Buying), 각종 서류양식과 지원서들(Forms and Applications),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연락번호들(Contacts), 이용가능한 행정기관의 서비스들(Find Services Near You: A Guide for Citizens)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각종 서류양식과 지원서들’에는 출생·사망·결혼·이혼증명서, 연방의 학자금 융자, 아동을 위한 건강보험, 온라인상의 상표 접수, 온라인상의 특허 접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필요한 서식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란에는 퇴직연금지원서, 사회보장카드지원서, 사회보장 수혜자 증명서 신청서식 등을 갖추어 놓고 있고 국민 각자가 그의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에 어떤 것이 있나를 ‘Check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한 점이 주목을 끈다. “E-business”에서는 국민들의 사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서비스들에 대해 구입/판매(Buying/Selling), 서식과 지원서들, 연락번호들의 란으로 나누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e-government”에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어 행정기관들의 대국민서비스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들(organizations)”란에는 연방행정부,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의 연방입법부, 대법원을 위시한 연방사법부, 주정부와 지방자치정부, 대국민서



비스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들의 사이트들에 연결될 수 있게 이들 사이트들을 링크시켜 놓았다. “당신의 정부를 접촉하세요(Contact Your Government)”란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들의 연락 주소와 전화번호, e-mail주소 등을 토픽별로 또는 기구별로 분류해 알려주고 있어서 국민들이 사안별로 혹은 기구별로 자신들이 접촉해야 하는 기관에 손쉽게 접촉할 수 있게 해놓고 있다.<sup>38)</sup> 끝으로 “참고 서가(Reference Shelf)”란에는 연방정부의 각종 법령과 규칙들을 모아놓은 ‘Laws & Regulations’가 있어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의 여러 법령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놓고 있고 ‘Statistics’에서는 각종 정부기관들이 작성한 대국민 관련 통계들을 모아놓고 있다. 이 통계들은 토픽별로 알파벳순으로도 분류되어 있고 행정기관별로도 분류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자기가 원하는 통계를 찾아볼 수 있게 해 놓았다.

## 2. 연방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

### (1)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연방상원의 웹페이지는 “www. senate.gov.”이다. 이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많은 유용한 링크들을 포함하고 있다.<sup>39)</sup>

첫째, 맨 위에 “상원의원들(Senators)”이란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알파벳순으로 정렬된 상원의원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 리스트는 각 상원의원들의 개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개인 웹페이지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상원의원의 웹페이지들은 법안, 그 의원의 의정활동기록 등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으나 어떤 상원의원의 웹페이지들은 사진 몇 장과 그 위원관련 언론보도만을 담고있을 따름이다.

38) 국민과 행정기관의 e-mail 접촉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는 C. RICHARD NEU, ROBERT H. ANDERSON, AND TORA K. BIKSON, SENDING YOUR GOVERNMENT A MESSAGE: E-MAIL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3-11 (New York: RAND, 1999) 참조.

39) ALLISON HAYWARD, SAMS TEACH YOURSELF TODAY E-POLITICS: USING THE INTERNET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INTERACT WITH YOUR GOVERNMENT 15-16 (Indianapolis: Sams publishing, 2000).

둘째, 상원의 홈페이지는 또한 상원의 의사일정표, 상원의 역사에 관한 문서들, 각종 위원회와 그 소속의원들의 명단, 의원들의 회의출석표, 기타 다른 연구정보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 입법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검색엔진인 “Thomas”에 이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다. 혹은 thomas.loc.gov의 주소로 직접 Thomas 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Thomas는 연방하원에 대한 입법정보도 가지고 있다. 이 검색엔진을 통해서 국민은 그들의 대표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Thomas 페이지는 상원과 하원의 의사일정표, 법안 원문, 의원들의 출석부, 의사기록(Congressional Records)에 나와있는 토론사항들, 기타 다른 유용한 의정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text파일 형태로도 나와있지만, 정부출판국(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찍은 그 법안의 원본을 PDF 파일 형태로도 보여주고 있어 실제의 페이지를 보고 연구 등에 각주로 인용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Thomas페이지의 좌측상단부에 “Bills in the News”라는 링크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화제가 되고 있는 법안들의 리스트가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이 페이지의 링크들은 몇몇 유용한 소스들에 연결되어 있다. 그 법안을 제출한 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의원이 제출한 다른 모든 법안들의 리스트가 뜬다. “Bill Status”에는 그 법안이 의회의 각 단계를 통과한 날짜와 그 법안에 가해진 변경 등이 설명되어 있다. 그 법안의 명칭을 모를 경우 그 법안의 번호를 통해서도 법안의 원문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 법안의 내에 존재하는 단어나 구절을 쳐 넣어서 그 법안을 찾을 수도 있다. 또한 Thomas는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들에 대한 링크도 가지고 있는데, 세출예산안, 탄핵문서 등이 그것들이다.

셋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연방상원의원은 각 주에 2명이 존재한다. 자기 주의 상원의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Connect”라는 명칭의 박스에서 주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 주에서 온 상원의원 2명의 명단이 나오고 그 이름을 클릭하면 그 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연결된다.

넷째, 이 상원 웹페이지를 통해 상원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e-mail을 보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견해를

그 상원의원에게 보내어 그 상원의원이 이를 고려하게 할 수도 있다. 앞에서 본대로 알파벳순으로 정렬된 상원의원 명단에서 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그 개인 홈페이지는 보통 그 의원에게 발송되는 e-mail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아니면 적어도 그 의원의 e-mail주소를 적어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의원들이 직접 모든 e-mail메세지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의원의 비서들이 보통 e-mail 메세지를 보고 처리한다. 직접 그 상원의원이 메시지를 보게 하려면 e-mail보다는 편지로 또박또박 내용을 적어 보내는 것이 아직은 훨씬 더 확률이 높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 e-mail의 간편성으로 인해 특정 이익집단들이 e-mail을 과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그 의원의 비서들은 많은 e-mail 메시지를 진지한 내용적 검토도 없이 지워버리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연방하원의 홈페이지는 “www.house.gov.”이다. 이 페이지의 링크들은 하원의원들의 명부, 의원개개인의 웹사이트들 그리고 의회 내 위원회들을 위한 특별 페이지들로 연결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또한 하원의 의사일정표, 의원들의 회의출석부 등도 링크되어 있다.

첫째, 입법의 단계나 입법에 관련된 기술적 용어들이 생소한 국민들을 위해 “입법절차(The Legislative Process)”라는 링크가 있다. 이 링크는 “같이 알아보기(Trying it All Together)”라는 명칭의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 이 페이지의 요약은 국민들이 입법절차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입법절차와 관련된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이 하원 홈페이지의 “How Our Laws Are Made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이용하면 된다.

둘째, 국민의 그의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을 알기는 상원의원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주의 크기나 인구수에 관계없이 2명씩 선출되는 데 비해 하원의원은 인구수에 따라 뽑히기 때문에 몬타나주와 같은 소수 인구의 주는 1명의 연방하원의원만을 가지는 반면, 캘리포니아와 같이 인구가 많은 큰 주는 52명의 연방하원의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수가 많은 주에는 연방하원의원 선거구가 여러 개가 존재하여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이 누구인가를 알기가 상원

의원의 경우 보다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방 하원 웹페이지는 “당신의 대표를 적으세요(Write Your Representative)”라는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오른쪽 박스에서 주를 고른다. 그 지역의 우편번호(ZIP Code)를 쳐 넣는다. 이 페이지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의 이름이 나타난다. 만약 그 의원이 “당신의 대표를 적으세요(Write Your Representative)”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 페이지는 그 국민이 그의 이름, 주소 거주 도시 등을 쳐 넣을 수 있는 박스를 가지고 있고 그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그 국민이 자신의 메시지를 그 연방하원의원에게 적어보낼 수 있는 두 번째 페이지가 나타난다. 만약 그 의원이 “당신의 대표를 적으세요(Write Your Representative)”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의원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페이지가 나타난다. 의원들에게 e-mail을 보냄으로써 국민은 연방방법의 개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 의원의 비서가 그 국민의 메시지를 하원의원에게 전달하고 그 의원의 소속위원회가 당신이 제기한 입법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국민의 의견이 새로운 법안의 일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연방행정부

우선 백악관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whitehouse.gov”이다. 그 사이트는 대통령과 영부인, 부통령과 그 부인의 활동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이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대통령, 영부인, 부통령, 부통령 부인에게 전달되는 e-mail서식이 나타난다. 이 e-mail서식은 앞에서 연방하원 웹페이지에서 보았던 “당신의 대표를 적으세요(Write Your Representative)”와 유사하다. E-mail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백악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전자회신메일이 온다. 백악관 웹페이지는 많은 유용한 페이지들에 연결되어 있다. “실제 도서관(The Virtual Library)” 링크를 클릭하면, 보고서, 라디오 연설, 행정명령과 같은 백악관 서류들의 링크 리스트들이 나타난다. 이 페이지에

직접 가려면 “www.whitehouse.gov.”를 치면 된다. 일주일 이내의 최신 정보와 흥미로운 통계를 원하면 “보고방(Briefing Room)”을 클릭하면 되고 직접 가려면 “www.whitehouse.gov/WH/html/briefroom.html”로 가면 된다. 백악관의 웹페이지는 또한 “자주 요청되는 연방서비스(Commonly Requested Federal Services)” 링크를 가지고 있다. 이 페이지는 여러 연방정부기관들에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이 그 링크들 중 중요한 것들이다.

첫째, 사회보장국(www.ssa.gov.)가 있다. 이 페이지는 사회보장국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링크들을 가지고 있다. 좌측상단부에 ‘빠른 검색 상자(quick search box)’가 있고 국민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주요어를 이에 쳐 넣고 “Go”를 클릭하면 적당한 페이지에 인도될 수 있다.

둘째, 국세청전자신문(The Internal Revenue Service’s Digital Daily, www.irs.gov.)이 있다. 이 페이지는 신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세금과 관련해 몇몇 유용한 링크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식과 출판(Forms Pubs)”(www.irs.gov/forms\_pubs/index.html)이 있는데 이 링크에는 현연도의 중요서식과 세금관련 출판의 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그 안의 “서식과 설명(Forms and Instructions)”(www.irs.gov/forms\_pubs/forms.html)을 클릭하면 현연도의 각종 세금 관련 서식과 그 작성방법 설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당신을 위한 세금정보(Tax Info For You)”는 국민들이 많이 묻는 세금관련 질문들을 리스트로 모아 놓고 있다. “세금 오솔길(Tax Trails)”은 많은 세금 관련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디자인된 “예” “아니오”식의 단답형 대답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 페이지는 예를 들어 국민이 사분기 세금지불을 해야하는지, 텃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국민이 어떤 세금공제에 해당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많은 정보들을 문답의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셋째, 센서스 웹페이지(www.census.gov.)가 있다. 통계국(Census Bureau)은 십년마다 긴 설문지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통계국이 편찬하는 통계들은 정부기관과 국민들에게 똑같이 유용하다. 통계청은 각 시나 지

역의 인구평가와 지역조사를 벌인다. 그것은 또한 경제센서스데이터를 간행해서 특정 비즈니스영역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나를 알려준다. “지도(Maps)” 링크에는 통계청의 ‘위상적으로 통합된 그래픽 암호화와 참고 시스템(Topologically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and Referencing System, 약칭 TIGER)’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지정한 지역의 - 보통 우편번호로 지정 - 지도를 비롯하여 센서스 결과, 공원, 거리, 고속도로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 등의 그 지역의 특징들이 소개된다. 지도의 경우 화면 상당의 축척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소축척의 상세한 지도나 대축척의 큰 지도를 볼 수도 있다. 센서스 웹페이지는 또한 “미합중국의 통계 요약(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www.census.gov/statab/www](http://www.census.gov/statab/www))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특히 경제, 토지계획, 성장, 환경문제 기타 다른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한다.

넷째, 그 외의 다른 연방행정부 웹사이트들로는 연방조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있다. 이 페이지는 긴급수배자리스트(Most Wanted list)를 비롯하여 범죄통계 링크, 인터넷범죄 보고서, FBI의 소식지인 “Cyber Notes”가 있는데 이 “Cyber Notes”에는 예를 들어 해커에 침입당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리스트 등이 있다.

다섯째, 교육부([www.ed.gov](http://www.ed.gov)) 웹페이지도 중요한 연방행정부 웹사이트들 중의 하나이다. 이 사이트는 전국의 학교들에 대한 정보나 통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용한 학비용자지원 링크([www.ed.gov/offices/OSF/AP/Students](http://www.ed.gov/offices/OSF/AP/Students))도 있다. 용자학자금을 통합정리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통합용자금정보센터([loanconsolidation.ed.gov](http://loanconsolidation.ed.gov))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여섯째, “연방기록(Federal Register)”은 행정기관들의 규칙, 제안된 규칙안들, 각 행정기관의 공고, 행정명령과 기타 대통령의 문서들에 대한 공식적인 일일기록들이다. 이 “연방기록(Federal Register)”은 정부출판국(Government Printing Office)([www.access.gpo.gov/su\\_docs/aces/aces140.html](http://www.access.gpo.gov/su_docs/aces/aces140.html))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간행된다. 이 페이지로부터 국민은 찾고자 하는 연방기록의 “연도”를 지정해 놓고 찾고자 하는 항목(규칙안, 최종규칙, 공고 대통령 문서들)을 정해 주제어를 넣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만약 그 규칙 등의 발표날짜를 알면 날짜나 기간을 넣어서 찾을 수도 있다. 연방규칙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정부출판국 페이지에 나와있는 연방규칙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을 통해 정보를 볼 수 있다. 국민이 그 연방규칙의 인용번호는 모르고 토픽만 알 경우 그 안의 CFR search page에 주제어를 넣어서 이런 연방규칙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본 “연방기록(Federal Register)”의 주제어 탐색과 흡사하다.

### (3) 연방법원

연방대법원은 최근에 그 웹사이트를 발전시켰는데 “www.supremecourtus.gov.”가 그것이다. 이 페이지는 연방대법원에 관련된 문서들과 연방대법원의 활동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에 대해>About the Supreme Court)” 링크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몇몇 서류들을 비치하고 있다. “소송사건일람표(Docket)” 버튼은 대법원의 소송사건들의 예정표를 갖고 있다. 변론과 평의가 열리는 날짜를 보여주는 대법원의 달력과 계획은 “달력과 계획표(Calendar and Schedule)”에 상세히 나와있다. 대법원규칙, 대법원 사건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 대법원변호사들을 위한 사건처리 가이드 등이 다음의 두 버튼에 상세히 나와있다. 대법원 사이트에 게재된 거의 모든 것은 text형식이 아니라 PDF형식으로 되어있어 text형식의 문서들보다 다운로드 받기가 더 힘들다. 법원 판결문 원문도 이 공식적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검색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판결문 검색은 다음과 같은 비공식적 사이트들이 많이 사용된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의 검색을 위해서는 코넬 로스쿨의 법정보기구(Cornell Law School’s Legal Information Institute)가 만든 LII(supct.law.cornell.edu/supct)가 많이 사용된다. 각 사건들은 판결선고 시기별로, 소송당사자의 이름별로, 사건번호별로, 변론기일별로 정리가 되어있다. 이 사건기록에는 판결문의 요약본과 판결문 전체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사건번호나 소송당사자이름을 몰라도 토픽별로 판결들을 검색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둘째, Northwestern대학이 관장하는 The Oyez<sup>40)</sup> Project(oyez.nwu.edu)도 있다. 이 페이지는 날짜별로 대법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링크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판례명, 판례번호, 판결주제, 판결선고일별로 분류해 판결문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사이트의 몇몇 판결들은 대법원의 구두변론기록에 연결되어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Real-Player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것을 통해 국민들은 중요한 판례의 구두 변론들을 당시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대법관들의 육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이트는 또한 대법원 건물의 가상 여행용 링크도 가지고 있다.

셋째, 웹상의 법률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FindLaw도 대법원자료들을 위한 특별페이지(supreme.findlaw.com/supreme\_court/resources.html)를 가지고 있다. FindLaw에서는 위에서 본 LII에 수록된 것과 유사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지만, LII와는 다른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소송사건일람표 링크는 소송사건들을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변론일을 기준으로 정리해 놓고 있고, 양측 소송당사자들의 변론준비서면(briefs)도 갖추어 놓고 있다. FindLaw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토픽들에 대한 논문들 링크도 갖추어 놓고 있다. E-mail update lists에 서명하면 특정 법분야의 발전에 관한 통보를 개인의 e-mail에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

넷째, 대법원역사회(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도 유용한 홈페이지(www.supremecourthistory.org)를 갖고 있다. 이 페이지의 링크들은 대법관들의 짧은 전기, 대법원의 역사에 대한 논문들 역대 모든 대법관들의 차트와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의 이름이 나와있다.

다섯째, 그 이외에도 대법원에 관한 배경정보와 그 판결들, 그 판결의 정부와 정치에 끼친 영향들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이 있다. 뉴욕타임즈의 대법원 가이드(New York Times Guide to the Supreme Court, www.nytimes.com/library/politics/scotus/ondex-scotus.html), Court TV의 “시간을 통한 여행(A Journey

40) “Oyez”는 “o-yay”라 발음되는 프랑스어로 “Hear Ye”의 의미이다. 이것은 노르만 정복 이후부터 18세기까지 연국법원에서 사용되었던 말로 대법원의 서기는 이 “Oyez, Oyez, Oyez”라는 말로 法廷을 開廷한다. 이 말에서 이 웹사이트의 명칭을 따왔다.



Through Time)”은 역사를 통한 대법원 정보를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로 “[www.courtstv.com/multimedia/supremecourt/index.html](http://www.courtstv.com/multimedia/supremecourt/index.html)”에서 제공한다. The USA Today Supreme Court 페이지도 대법원에 관한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www.usatoday.com/news/court/nscot000.htm](http://www.usatoday.com/news/court/nscot000.htm)”에서 제공한다. 그 이외에도 다시 “[www.washingtonpost.com/wp-srv/national/longterm/supcourt/supcourt.htm](http://www.washingtonpost.com/wp-srv/national/longterm/supcourt/supcourt.htm)”의 워싱턴포스트의 대법원 페이지나 “[www.lawnewsnetwork.com/supremecourt](http://www.lawnewsnetwork.com/supremecourt)”의 법률뉴스네트워크의 대법원 보고서도 대법원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이다.

다른 연방법원들에 관해서는 연방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연방사법부 홈페이지(Federal Judiciary Home Page)”([www.uscourts.gov](http://www.uscourts.gov))가 유용하다. 여기에는 수많은 연방일심법원인 연방지방법원과, 11개의 연방이심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 관한 정보들과 이 사이트들로의 연결링크가 있다. 특히 연방항소법원의 경우 예모리 로스쿨에서 관리하는 “U.S. Federal Court Finder”이 “[www.law.emory.edu/FEDCTS/](http://www.law.emory.edu/FEDCTS/)”에 있는데 이것도 보조적인 유용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법원으로서의 연방청구권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의 페이지가 조지 워싱턴 로스쿨이 관리하는 [www.law.gwu.edu/fedcl](http://www.law.gwu.edu/fedcl)에 존재한다. 이 법원은 주로 세금환수소송, 연방정부계약에 대한 다툼, 연방법률과 규칙 하에서 개인재산의 수용이나 압류에 대한 보상소송 등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소송을 다룬다. 연방국제거래법원은 수출입과 기타 무역에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데 “[www.uscit.gov](http://www.uscit.gov).”에 페이지를 두고 있다.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IRS)의 정부보조금 책정에 관한 항소심 등을 다루는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은 “[www.ustaxcourt.gov/ustcweb.htm](http://www.ustaxcourt.gov/ustcweb.htm)”에 유용한 페이지를 두고 있다.

## 제 4 장 각 州 레벨에서의 전자정부관련 법제들과 사이트들

연방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는 비교적 체계화 시켜 살펴볼 수 있었지만, 주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는 이의 발달 정도가 주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럼,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된 몇 개의 특이한 州法制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제 1 절 Kansas주 Twin City의 Twin City Free Net

우선, 첫째, 미국 Kansas주 Twin City의 경우, 트윈시티 프리넷(Twin City Free Net)을 두어 시민들에게 무료 e-mail을 제공하고 인터넷의 상호작용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토론과 지역현안에 관여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sup>41)</sup> 트윈시티 프리넷은 비영리 私組織으로서 - 사조직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와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주민의 토론내용을 지방정부에 전달하므로 전자지방정부 구현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비영리지역주민 공통의 이해와 관심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인터넷기술을 통해 한 덩어리로 물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1995년 이후 미네아폴리스시나 세인트폴시와 그 인접지역들의 구성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물론 도메인 네임을 얻기 위해서는 월 20달러, 웹 호스팅을 위해서는 월 12달러 95센트의 회비가 부과된다. 지역정보로서, 트윈시티와 그 메트로 에어리어의 시와 이웃들에 관한 정보를 읽고 그 지역의 이슈들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그 지역내의 1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와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비영리정보관리도서관이나 지역 이슈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이슈들에 관한 토론장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트윈 시티 주민이나 미네소타주 거주 주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41) 트윈시티 프리넷의 운영에 대해 자세히는 <http://www.freenet.msp.mn.us> 참조.

## 제 2 절 California주 시미밸리시의 HUD

미국 California주 시미밸리시에서는, HUD(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미국 주택도시건설부)가 자신이 보조금을 대는 주택의 거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컴퓨터 센터를 건립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시험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의 소수그룹들이 지역 내에서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들이다.<sup>42)</sup> 1995년 HUD는 컴퓨터 교육을 촉진하고 공공주택 거주자의 온라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개의 시험프로그램을 수행하였는데, 그 두 가지가 ‘근린 네트워크(Neighborhood Networks)’와 ‘학습자 캠퍼스(Campus of Learners)’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 기반의 컴퓨터센터와 유관 학교, 지역 건물 등의 건설을 위해 수립된 것이었다. 그 한 예로 HUD는 1995년 9월 Notice H95-81을 통해 공공 주택 건설 프로젝트 내에 CLC(Computer Learning Center, 컴퓨터 학습센터)개발과 설립을 결정하고 거주자들에게 CCCP(Computer Community Connection Project, 컴퓨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연결계획)를 수립할 책임을 지우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획득하기 위해 공공부문, 행정기관, 개인들과 협조해야할 의무를 지우면서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제 3 절 Ohio주의 Ohio Public Records Act

Ohio주는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50개 州들 중 가장 오랜 고민과 노력의 역사를 가진 州들 중의 하나이다. 오하이오주는 1960년 초기에 시민의 정부자료 열람에는 기록보고서, 정부 사업에 대한 열람 등이 포함된다고 공인하였다. 또 오하이오주 주대법원은 오하이오주 주정부 자료는 주민의 자료임을 천명한 바도 여러 번 있었다. 또 주법원은 시민의

42) G7 GOL 운영위원회, 『세계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원성목·김장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110~11쪽 참조.

자료열람권이 정부자료를 제작하고 저장하는 기술의 변화와 함께 변화된다는 것도 여러 번 공언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주정부는 현존의 기술에 맞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디지털 정보사회에 있어 오하이오주는 시민들에게 컴퓨터 기록 출력을 제공하는 대신, 시민의 전자기록 이용을 허락해야만 하게 되었다.<sup>43)</sup> 주의회는 이에 ‘Ohio Public Records Act(오하이오주 공공기록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오하이오주는 시민들이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열람할 수 있고 가장 염가로 복사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의 허가 없이는 복사가격을 변동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몇몇 극비 자료들은 그 성격에 따라 주민들에 의한 열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제 4 절 Washington주의 AccessWashington 웹사이트<sup>44)</sup>

워싱턴주는 AccessWashington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Ask George”란에 국민이 질문을 쳐 넣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웹사이트를 찾아주는 빠른 속도의 검색엔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government”와 “on-line services”란에 여러 유용한 링크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 “Government”란에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게 될 “전자정부계획(Digital Government Plan)”을 위시한 여러 정부의 정보기술들에 대한 설명과 사이트들이 링크되어 있다. 또한 “government”내의 “state”에는 주헌법을 위시하여 주정부와 주법원, 주의회의 연락처와 각각의 사이트들로의 연결이 되어 있으며, “local”에서는 카운티별로 혹은 시별로 지방자치정부의 구성과 조직, 연락처를 가진 directory가 나와있다. “On-line Services”란에는 온라인을 통한 여러 행정서비스 항목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보건서비스와 함께, 출생·사망·결혼·이혼에 관한 증명서를 비롯하여 여러 주정부 행정서류서비스들

43) 전계서, 151~152쪽.

44) <http://access.wa.gov/> 참조.

의 주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주의 여러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정보와 이의 유지를 위한 국민에 의한 시설 보수 신청 등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이외에 “법집행(law enforcement)”란에는 작업장 사기에 대한 온라인상의 신고를 가능하게 해놓았고, 주의 주민의 전과기록을 비롯한 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범죄 역사(criminal history)”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는 우리가 앞에서 본 디지털정부의 개념을 중시하고 발전시켜 주가 “전자정부계획(Digital Government Plan)”<sup>45)</sup>을 일찍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채롭다. 워싱턴주는 디지털정부란 공공부문이 실제시간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실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디지털정부의 건립을 주정부의 핵심업무로 보고 있으며 주 밖에서 어떤 원조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디지털정부의 독자적인 건립을 위해 워싱턴주는 주의 기관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쉽게 공유될 수 있는 기술요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필요로 했다. 미국 유일의 정부기술계획으로서, 워싱턴주 디지털정부계획은 온라인상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를 주정부 기관들이 충족시키고 정부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단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계획은 여러 구성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주를 하나의 사업주체(enterprise)로 보고 “한번에 세우기” 작전을 따르는데 그 작전은 주정부 기관들이 같은 노력의 누차에 걸친 분산된 시도를 막고 공통된 기준을 지향하며, 부단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통된 기반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워싱턴주의 디지털정부계획은 2000년 2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그것은 6개월이나 9개월마다 다른 일련의 중간목표들을 가지고 다시 작성된다. 이 새로운 계획 갱신주기는 오늘날의 기술환경의 빠른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계획 1.0은 비전과 내부구조를 보여주고 디지털정부계획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보여준다. 계획 2.0은 지속적인 계획의 점검과 세련화를 보여주고, 계획 3.0은 앞의 두 계획 위에서 그 계획 시행의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45) <http://www.wa.gov/dis/role/plan.htm> 참조.

디지털정부계획은 다음을 위한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동계획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접근적인 방법으로 정부서비스와 정보를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지침서이다. 내부구조의 발전,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기술프로젝트들에 익숙해져가는 정부기관들의 정책과 인터넷 사용의 조정을 위한 지침서이다.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온라인 정보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의 “하나의 얼굴”을 달성하는 지침서이다. 또한 주정부 내에서 주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자원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기술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지침서이다.

이 디지털정부계획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를 다 아우르면서 가치 공동체를 건설하려 함께 일하는 주체들로서 디지털워싱턴공동체(Digital Washington Communities)의<sup>46)</sup> 개념을 도입하였다. 사법정보네트워크(Justice Information Network), 워싱턴주 그래픽정보 위원회(Washington State Geographic Information Council), K-20 교육원격통신네트워크(Educ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 정보서비스부의 회의와 이벤트들(DIS Meetings & Events)이 그것들이다. 이 주체들은 과거 상호연결의 정부간 프로젝트와 부단한 정부를 세우기 위한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다. 몇몇 기존의 정부간 정보기술 자문그룹들과 특별전문위원회들은 디지털정부의 시행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주체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첫째, 사법정보네트워크(The Justice Information Network, 약칭은 JIN)이 있다. 사법정보시스템들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각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발달되어왔다. JIN의 입안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주, 연방행정기관에게 교정부, 특허부, 워싱턴주 순찰대, 법원이나 다른 기관들의 행정처의 데이터 베이스에 한번에 분리된 접근을 제공함에 있어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JIN을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 사법공동체의 대표들은 법집행기관, 검사, 법원 측의 실제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간의 효과적인 협력에 근거한 제휴관계를 출범시켰다. 그들간의 공동 노력의 결과, JIN은 주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사법기관들을 서로 연결하고 형사 사법정보에 그들의 전자적 접근을 증가시켜 오고 있다.

46) <http://www.wa.gov/dis/role/communities.htm> 참조.

둘째, 워싱턴주 그래픽 정보위원회(The Washington State Geographic Information Council, 약칭 WAGIC)가 있다. WAGIC는 그래픽 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약칭 GIS)을 사용하는 기존의 서로 분리된 공공주체들을 함께 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GIS기술은 자료 검색요구의 용량을 통합하고 통계적 분석을 지도에 의해 제공된 자료들을 시각화나 지리적 분석과 합체시켰다. GIS는 넓은 범위의 공적 사적 주체들이 인간 활동과 자연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건들을 설명하고 그 결과들을 예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정보서비스부(DIS)의 도움을 받아, WAGIC의 직원들은 WAGIC의 일을 처리하고 연장, 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고등교육기관들 그리고 사적 주체들로부터의 GIS참여자들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WAGIC는 워싱턴주립대학과의 협력하에 웹에 기반한 공간데이터 정보센터를 유지하고 GIS 조정과 발전을 위한 주의 전략적 계획을 발전시켰다. WAGIC는 (토지소유, 물과 水文學, 교통 등) 공유할 수 있는 GIS 데이터 주제들을 건설할 몇몇 행정기관간 데이터망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애써왔다. 가장 최근에는, 형사사법을 위한 조정모델이 연어와 분수령 정보 처리(Salmon and Watershed Information Management, SWIM) 프로그램의 건립을 통한 연어생산 회복 노력을 도울 WAGIC의 업무와 같이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다.

셋째, K-20 교육 원격통신 네트워크(Educ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가 있다. 1996년에 워싱턴주 입법부는 교육에 있어 기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500만 달러 상당의 K-20 교육 원격통신 네트워크 건립을 허가했다. 그 결과 모든 워싱턴의 공교육 부문에 인터넷의 사용과 쌍방향 비디오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학교와 공교육부문을 서로 연결하는 고속의 원격통신 중추가 형성되었다. 미국에서 그 계통의 첫 시도이자 최고로 인식되면서, K-20 네트워크는 K-12 대표들, 2년제 지역대학이나 기술대학들, 4년제 대학들, 정보서비스부, 주입법부와 사적 부문의 기술제공자들의 협동적 노력으로부터 탄생했다. 정보에의 접근과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은 모두 K-20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하다.

## 제 5 절 Utah주의 Utah Digital Signature Act

### 1. 입법배경

유타주의 유타디지털서명법은 위에서 본 미국의 연방전자서명법 등의 제정에 있어 그 모델 역할을 한 것으로 연방뿐만이 아니라 각종 주들의 전자서명 관련 입법에도<sup>47)</sup> 영향을 준 미국 내 최초의 전자서명 입법이었다. 그리고 이 법은 독일의 디지털서명법(Signaturgesetz)이나 유럽의 전자서명에 관한 유럽지침(European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s)에도 영향을 주는 등 외국의 전자서명 관련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준 이 분야의 선구적 입법이었다.

이 법은 1995년에 주의회를 통과하여 1996년에 한번 개정된 바 있다. 그리고 유타주 행정법규집 규칙 154-10(UT Admin Code R154-10)과 같이 이 법의 시행에 관련된 시행규칙들도 그 후에 제정이 되었으며, 최초의 '내부구조 제공자들(infrastructure providers)'도 선정이 되었다. 법원관계서류와 통일상법전 관련 서류들을 최초로 전자적 형태로 접수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2. 주요 내용

이 법은 크게 용어, 해석, 정의를 다룬 제1편, 인증기관의 허가과 규제에 관한 제2편, 인증기관과 서명자의 의무에 관한 제3편, 디지털서명의 효과에 대한 제4편, 주의 서비스와 제조직된 보관소에 관한 제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8)</sup>

---

47) 유타주 디지털서명법에 영향을 받은 다른 주의 전자서명 관련 입법으로는 워싱턴주의 전자진위확인법(Washington State's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오레곤 주의 전자서명법(Oregon's Electronic Signature Act),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전자통상법(North Carolina Electronic Commerce Act),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 서명규칙(California's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네브라스카주의 디지털서명법(Nebraska's Digital Signatures Act), 텍사스주의 디지털서명규칙(Texas Digital Signature Rule) 등이 있다.

48) 조문 원문에 대해서는 <http://www.jmls.edu/cyber/statutes/udsa.html> 참조.



이 법은 특히 46-3-204항 등에서 디지털서명이 종이에 서명된 것과 같이 유효하고 집행력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 메시지가 디지털서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그 디지털서명이 인증서에 기재된 공개키(public key)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타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디지털서명은 自書署名을 요구하는 유타주의 법을 만족시킨다고 함으로써, 자서서명을 요구하는 유타주의 법령을 다시 개정해야할 필요성을 없애 주었다. 또한 주 자체가 주된 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타주 통상부를 통해 다른 인증기관들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46-3-201항)도 주목을 끈다.

46-3-502항은 보관소(repositories)의 승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받은 인증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보관소는 첫째, 내용에 있어 실제적으로 유사한 증명서의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있고 둘째, 보관소의 정보들이 진실되고 정확하며 합리적으로 신뢰할만한 것이고, 셋째, 보관소와 보관소의 운영자, 보관소에서 증명서를 발부하는 인증기관이 유타주의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유타주의 것보다 증명기관에 대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고 평가되는 법령 규칙에 따르고, 넷째, 그 보관소가 위원회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시간 각인 서비스(time-stamping service)’를 제공하고, 다섯째, 그 보관소가 사용이 정지된, 효력이 살아난, 만료가 된 증명서를 보관하고, 여섯째, 보관소가 문서로 가까운 장래에 보관소로서 계속 행동할 의도를 표시하고 그 보관소의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으로 보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승인 받는다. 보관소는 전자서명위원회에 서면지원서를 접수하거나 위원회에 승인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위원회는 그 보관소가 이 항에 규정된 승인의 요건들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절차법 46b장 63조에 규정된 절차들에 따라 보관소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전자서명위원회는 보관소의 이름과 주소, 모든 보관소의 공개키를 발간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인증기관에 의해서도 금지된 위험한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46-3-207),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에의 서명 이용자, 인증기관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를 신뢰하는 사람들, 46-3-502항에 따라 승인된 보관소(repository)에 불합리한 손실의 위험을 상업적으로 야기하는 방식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들 중의 하나이다.

### 3. 평 가

이 법이 지향하는 미래의 발전양태로 주가 주도할 것은 스마트카드(smart cards), 전자적 公證印(electronic notary seals), 전자서명 대리인(Signature surrogates)가 있고, 사적 부분이 주도하는 것은 사이버공증(cyber notaries), 전자수표(electronic checks), 익명의 확증거래(anonymous verified transactions)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sup>49)</sup>

이 법에 대해서도 C. Bradford Biddle 등은 이 법이 공개키 기반구조의 책임 배분문제에 있어 정책결정에 그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sup>50)</sup> 그러면서 그는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이 결국은 사적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캘리포니아주 디지털서명규제법(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sup>51)</sup>에 영향을 많이 주었으나, 캘리포니아주의 동법은 약 65개의 소비자관련법률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과 큰 차이를 가진다.

---

49) Lee Hollar, *The Utah Digital Signature Act: Presentation to Computer Science, VPI & SU*, in <http://ei.cs.vt.edu/~wwwbtb/Notes/UtahDigSig/sld013.htm>.

50) C. Bradford Biddle, *Misplaced Priorities: The Utah Digital Signature Act and Liability Allocation in a Public Key Infrastructure*, 33 San Diego Law Review 1146 (1996).

51) <http://www.ss.ca.gov/digsig/regulations.htm> 참조.



## 제 5 장 미국 전자정부법제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전자정부법제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 한국에 도입가능한 법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이야기 해서,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는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한국에 많은 시사점이랄지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의 전자정부관련법제는 특히 연방법제의 경우 크게 봐서 각 법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서로간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고 있다. 미국 전자정부 연방법제의 두 축인 정부문서감축법과 정부업무수행결과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두 법은 다시 몇몇 특수한 영역에서 다른 부수 법제들이나 행정명령, 행정지침, 훈령 등과 상호보완과 구체화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도 이러한 유기적 보완과 연관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둘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기술의 표준화가 미국 법제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60년대부터 여러 법제들에서 정보기술의 표준화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위에서 본 NIST(국가표준기술원)를 중심으로 모든 정부정보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작업을 진행해 왔고 또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탄생하는 새로운 정보기술들에 대한 표준화작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여러 연방법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정책의 추진 주체가 연방행정부 내의 운영예산처(OMB)등으로 일차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는데다가 다시 이차적으로는 각 정부부서에 최고정보담당관(CIO)을 두어 그 부서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각 부서별로 이 전자정부 정책의 추진주체를 분산시키고 있기도 하다. 즉,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이중적 추진주체 구조를 갖춤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눈을 돌려, 1998년의 사회복지법 제508항에서 보았듯이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들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에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늙고 가난하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농촌 사람들 보다는 젊고 부유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도시사람들이 더 많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 등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이러한 전자정부화의 추세 속에서 오히려 점점 더 소외되어 갈 수도 있다. 조급하고 영성 없는 전자정부 구현 시도는 따라서 ‘평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인터넷에의 접근은 경제, 인종, 교육적 차원에서 한쪽에 편중되어있다. 현재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클럽이며 그 회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사회적·경제적 장벽들을 뛰어넘어야만 하고, 엘리트들은 인터넷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쌓으며 기술적·정보적인 엘리티시즘을 확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을 통해 전자정보에의 접근에 있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특별 보호하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주레벨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에서 본 바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HUD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정보기술에의 대한 폭넓은 접근을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도 필자의 눈에는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한 불평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의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확대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미래 정보사회의 정부”라고<sup>52)</sup> 보았을 때 이러한 노력은 전자정부 법제의 마련에 더욱더 요구된다.

다섯째, 미국 전자정부법의 핵심목표는 ‘정부혁신(government re-inventing)’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단순한 통신망의 구축이나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문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행정개혁과 정부혁신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는 이러한 큰 목표를 명백히 설정한 연후에 구체적인 법제들을 통해 이 목표를 향해 한발짝씩 한발짝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미국에서는 여러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정비에 못지 않게 이 법제에 근거해서 많은 연방과 주레벨에서의 대국민이용 정부관련 인터넷사

52) 정충식, 『전자정부론』 (논두출판사, 1997) 105쪽 참조.

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국민들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특히 “디지털정부” 개념의 도입으로 정부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one-stop-shop”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고 신속하게 정부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 제 6 장 미국 전자정부법제의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끝으로 미국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미국 전자정부법제가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해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전자정부 구현의 과정에서 바로 위에서 거론한 ‘평등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정부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라는 또 다른 전자정부 구현의 목표가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의 정보 열람은 정부의 자료는 물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정부의 예비자료 조차 시민이 접속·열람 가능한 정보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 정도 수준의 과도한 정부정보에의 접근은 정부의 업무수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 관료의 정책수립 과정 중 원만한 토론의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마저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정부자료 열람 권리를 민주주의의 이념 측면에서 유지·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정부의 업무수행의 효율 및 효과를 증대시키는 측면도 고려하는 전자정부관련법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글로벌 사이버 스페이스내의 전자민주주의(on-line democracy)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분야에의 접근에 있어 정보촉진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 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없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굳이 도입해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자정부 구현 사업의 범부처적 연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료사회에 엄존하는 강한 부처독립주의 관행, 通法府化한 우리 국회에서의 취약한 입법 심의 등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화 만큼은 미국과 같은 이러한 개별법적 접근방식 보다는 기본법적 접근방식에 입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53)</sup>

끝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이나 주레벨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국민들이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정부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53) 같은 입장으로는 정충식, 전계논문, 44쪽 참조.



하는(one-stop-shop) 좋은 정부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이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개발되고 또 발전되어감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고 있다. 우리도 전자정부관련법제의 정비에 못지 않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들을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전자정부 구현”에 한 실용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제 7 장 결 론

전자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의 문서감축법의 주된 내용을 간단히 표현하면, 그것은 공무원에게 수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를 늘려가도록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관련된 정부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정부 내부 업무에서는 물론이고 국민과의 외부업무에서도 전자적 방식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변화에 대한 뚜렷한 자각없이 과거의 수작업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의 구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sup>54)</sup>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지향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정부부처나 민간부문에서의 종이소비량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sup>55)</sup> 이를 뒷받침해 준다. ‘종이없는 정부’가 정부의 국정목표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종이소비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한다. 일선공무원들은 이 국정목표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하소연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선 공공기관에 있어 공무원이 전자결재를 올리면 상급자가 이를 출력해 오라고 해서 그 출력물 위에 상급자가 수정을 해주게 되며 이 수정된 종이 출력물을 보고 그 부하 공무원이 다시 전자결재 문서를 작성해 올리는 형편이라 한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의 처리에 있어 전산망에 접속하여 필요한 타부서의 서류를 출력함으로써 전산화는 더 많은 프린터 용지의 사용을 불러왔고 이는 종이소비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업무채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양식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자정부로의 이행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여기에 많은 수의 민간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4) 같은 입장으로는 정충식, 전개논문, 50~51쪽 참조.

55) 조선일보 2001년 5월 24일자(제25007호), 25쪽 참조.

## 제7장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개혁의 추진과 정보기술의 활용노력이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행정개혁을 이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시바빠 전자정부 구현을 새로이 행정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고도로 체계화된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그 추진조직을 일원화하여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 Biddle, C. Bradford, *Misplaced Priorities: The Utah Digital Signature Act and Liability Allocation in a Public Key Infrastructure*, 33 San Diego Law Review 1146 (1996)
- GODWIN, MIKE, *CYBER RIGHTS: DEFENDING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New York: Random House, 1998)
- HAYWARD, ALLISON, *SAMS TEACH YOURSELF TODAY E-POLITICS: USING THE INTERNET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INTERACT WITH YOUR GOVERNMENT* (Indianapolis: Sams publishing, 2000)
- NATIONAL PERFORMANCE REVIEW,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1993
- NEU, C. RICHARD, ROBERT H. ANDERSON, AND TORA K. BIKSON, *SENDING YOUR GOVERNMENT A MESSAGE: E-MAIL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New York: RAND, 1999)
- SENATE REPORT. No.106-131 (1999), 1999 WL 555831  
*Statement by President William J. Clinton Signing H.R. 2130*,  
36 WEEKLY COMP. PRES. DOC 1560 (June 30, 2000)